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사회적기업을 위한 공공구매 매뉴얼



CONTENTS

제1장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1.1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6
1.2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기관	7
1.3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10
1.4 우선구매제도 활용 의의 및 현황	20
1.5 유사분야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25
1.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28

공공(국가 및 지방)계약의 이해

제2장

2.1 공공계약의 의의와 특징	32
2.2 계약의 종류	35
2.3 내자구매(물품 및 용역) 계약	36

제3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3.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66
3.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70
3.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76



제4장

중소기업 공공 우선구매제도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80
4.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84
4.3 중소기업 규모별 경쟁제도	86
4.4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89
4.5 직접생산확인제도	91
4.6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93
4.7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96
4.8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98
4.9 공공구매론	100
4.10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	102
4.1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106
4.1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108
4.13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110

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구매제도

제5장

5.1 조달청 사회적기업 가점제도	114
5.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제도	120
5.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소액수의계약제도	123
5.4 단체표준제도	124
붙임1. 공공기관별 '17년 구매실적 및 '18년 구매계획	127
붙임2. 2018년도 권역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현황	152
붙임3. 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운영 현황 ('18.04.11기준)	153



제1장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 1.1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 1.2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기관
- 1.3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 1.4 우선구매제도 활용 의의 및 현황
- 1.5 유사분야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 1.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1.1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개요

- ☞ 우선구매제도는 정부재정을 활용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친환경/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기업, 단체 등이 생산 또는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을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 ☞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닌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상품을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이 여성, 중증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 할 수 있다.
 -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 및 성장구조를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이점이 있다.

- ☞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평가 시 “정책지원” 평가분야의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여 법정 구매 목표비율 충족 수준 등을 관리하는 7가지의 우선구매제도가 존재한다.

1.2 공공조달 우선구매 대상기관



-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수요기관의 종류는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기타기관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다.
- 국가중앙 조달기관인 조달청의 2017년 말 기준 공공조달 대상 수요기관은 총 52,295개이며, 광역시도 지방교육청 및 산하 교육지원청, 공·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등이 포함된 교육기관이 22.1%, 특수법인, 공익법인 등이 속하는 기타 수요기관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구분	합계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						
			지자체	교육 기관	소계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지방 공기업	기타	소계	
2017년	기관수	52,295	4,894	6,735	11,597	18,332	947	1,325	438	236	26,123	29,069
	(%)	100.0	9.4	12.9	22.1	35	1.8	2.5	0.9	0.4	50.0	55.6

※자료: 조달통계(조달청, 2017.12)

- 상기구분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달 및 계약 실무에서 수요 기관의 유형을 정의하는 것으로 조달청의 “조달사업 수요기관 기준” (조달청 고시 제 2015-22호, 2015.8.6., 일부개정)에서는 크게 당연기관과 임의기관으로 세분화 하여 관리하고 있다.

- **당연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 요청을 하여야 하는 기관으로 국가기관, 국립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소속 교육기관 및 학교 등이 포함된다.

- 국가기관 :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기관으로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조달청 등 중앙행정기관
- 국립교육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로, 국립 초·중·고·대학교(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등)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직영기업 :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및 산하 240여 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SH공사, 서울메트로, 인천교통공사 등
- 지방의회 : 지방자치법 제30조에 의한 각급 지방의회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광역시도) 및 산하 240여 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의회
- 교육기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각급 교육청,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립 유치원 및 공립학교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등 광역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및 각급 공립 학교



- 임의기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소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공기업(지방공사 및 공단), 사립 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특별법인, 공익법인 등이 해당된다.

-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기관
 - 공기업 :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35개
 - 준정부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장학재단 등 93개
 - 기타공공기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210개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출연 및 투자한 지방공공기관(인천개발공사 등)
 -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경영하는 지방직영기업의 종사자는 공무원 신분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다' 목에 해당하는 법인
 - 전 1)호 이외의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1.3

정부의 정책적 지원대상 우선구매제도



1.3.1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공사·용역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법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제품(물품·공사·용역) 구매 총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시행령 제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2월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한다.(법 제5조, 시행령 제4조)

- 대상기관(832개, 2017년말 기준) : 국가기관 53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교육청 17개, 공공기관 330개, 지방공기업 149개, 지방의료원 34개, 특별법인 6개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27개 포함),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1.3.2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한다.(법 제13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목표비율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으로 요구한다.(시행령 제12조)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적용대상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중소기업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

합중양회,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은행,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지자체의 재정지원 기관, 사립학교

 기술개발제품(9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제품

유형(9종)	설 명
EPC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우수조달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
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GS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SW
NET	지경부·환경부·국토부 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단계에서 성능확인을 마친 제품
구매조건부 R&D성공제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우수조달공동상표 지정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2에 의해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물품(통상실시권자 제외)
민·관공동투자기술 개발사업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공공부문)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녹색인증 대상제품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녹색인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녹색인증된 제품

1.3.3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근거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한다.

- 법률 개정(여성기업법 제9조)을 통해 권고에서 의무화로 변경('14.1.1 시행)

- 정부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의무화 강화를 위해, 공공시장 내 여성기업에 대한 법률을 통한 구매 의무와 소액수의계약 금액 기준을 상향한다.

- 여성기업제품 구매 의무화, 소액 수의계약 금액 상향(2천만원→5천만원)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 제품 : 물품, 공사, 용역

☞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여성이 대표권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

- 공동대표의 경우, 여성공동대표의 주식이 남성보다 많은 기업

☞ 여성기업 제품 :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1.3.4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근거

장해인기업 활동촉진법 제9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연간 물품·용역·공사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한다.
- 정부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의무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17년 장애인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목표비율을 1%로 상향 의무 적용한다.

-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부장관과 별도협의 가능
- 장애인기업제품은 1%(물품, 용역, 공사 통합),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물품, 용역), 표준사업장은 0.3%(물품, 용역)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용역, 공사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

- 소기업 : 대표가 장애인
- 중기업 이상 : 대표가 장애인이고 고용인원의 30% 이상이 장애인

장애인기업 제품 :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중소기업자만 해당)

- 구매계획 및 실적에 장애인 생산제품이라도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시설, 표준사업장 등으로 구분·관리가 필요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1.3.5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 : 물품, 용역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 '18.05월 기준 1,937개소 활동(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사회적기업 제품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1.3.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근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10조

- 공공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의 1%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 해당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 물품 + 노무용역 등 서비스(단, 공사제외)

✓ 주요 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지적장애인 · 자폐성장아인 · 정신장애인 · 호흡기장애인 · 언어장애인
2.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 · 심장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 · 지체장애인 · 청각장애인 · 신장장애인 · 간질장애인 · 간장애인 · 안면장애인 · 장루 · 요루장애인
4.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기준

☞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7명 이상일 것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상시적으로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걸리는 총근로시간 중 장애인의 근로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시적으로 100분의 50 이상일 것

☞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1.3.7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관련근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수익사업 지원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자립지원에 관한 훈령」 국무총리훈령 제601호('13.4.15.)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 주요 정의 및 적용대상

주요 정의

- 자활용사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집단촌
- 복지공장 :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서 회원의 자활자립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복지사업장
- 생산품목 : 국가보훈처장이 승인한 복지공장 품목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게시 : 정보마당 - 현황 및 통계 - 기타

- 자활용사촌 구매액 : 복지공장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
- 자활용사촌 생산가능품목 총 구매액 : 자활용사촌에서 구매가능한 품목이지만 타 업체에서 구매한 금액과 자활용사촌에서 직접 구매한 금액을 합한 금액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1.3.8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 관련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녹색제품의 범위(법 제2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녹색제품으로서 환경표지(마크), 우수재활용(GR) 인증을 받은 제품

–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명칭 변경('11.4.5 개정)

☞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의무 부여(법 제6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했다.

– 안정적 공급 불가, 현저한 품질저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인정

☞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업무 평가 항목에 구매실적 반영 등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 주요 정의

☞ 녹색제품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상품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 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 인증을 받은 상품이다.

- ☞ 적용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1.4 우선구매제도 활용의 의의 및 현황

1.4.1 우선구매제도 활용의의

- ☞ 일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공공조달 영역 내에서 우선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여성 및 장애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기업, 국가적 선양과 예우가 필요한 보훈단체 그리고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제품 및 제조공급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 따라서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과 이를 제조 및 공급하는 업체 및 단체들은 공공조달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재정을 배분 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 ☞ 이러한 측면에서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업체 및 단체들은 일반적인 조달업체 및 단체들과 달리 그들이 공급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직접생산 확인기준 및 관련 우선구매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적용받고 이를 준수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 ☞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공급되는 물품들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체들에 비해 공급기회, 대가보장 측면에서 일반기업들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생적인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다.
- ☞ 그러나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은 우선구매제도를 통한 공공조달 시장 진출 자체를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머물러 있는 전략을 채택하면 곤란하다.

- 우선구매제도의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가 단기적으로는 일반 기업 및 제품들에 비해 경쟁열위에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공급기회의 선점, 보다 좋은 조건의 공급계약 등을 통해 축적된 향상된 경쟁력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수단 및 촉매제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1.4.2 우선구매제도 대상기업별 공공조달 활용현황

☞ 조달청 나라장터 기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사회경제적 배려 기업 관련 공공 구매 현황 중 사회적기업의 조달업체 등록 수 비중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 사회적기업의 경우 378개(2010년) → 502개(2011년) → 618개(2012년) → 667개(2013년) → 927개(2014년) → 1,217개(2015년) → 1,615개(2016년) → 1,879개(2017년)로 우선구매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25% 수준에서 지속적 증가하여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2017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총 1,879개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총 4,126억원(2016년 : 3,512억원)의 공급실적을 기록했다(중앙조달실적 기준).

- 2017년 전체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실적 9,428억원의 약 43.8%가 나라장터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입찰 참가회의 확보관점에서 중앙조달 기관인 조달청 이외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기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자체조달 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수요가 약 56% 수준이므로 개별 수요기관의 물품공급 정보 확보와 차별화된 공급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지원대상이 구체적이고 제한/지명경쟁 가능 구매부문, 특화된 기술 및 품질보유 우선구매제도 기업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실적을 나타낸다.

☞ 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원 대상 및 공급 가능한 품목을 고려할 경우 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 내에서 평균적인 공급규모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새로운 상품과 용역의 개발 및 수요를 견인하지 못할 경우 현재 주어진 공공구매 예산 범위 내에서 기존 사회경제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공공구매제도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구분 (2017년 기준)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수(누계)					나라장터 계약 및 공급실적(초회기간, 억원)					
	물품	용역	공사	외자	계(A)	물품 실적	용역 실적	공사 실적	외자 실적	계(B)	평균 공급 금액 (B/A)
사회적기업	847	916	112	4	1,879	2,122	1,875	129		4,126	2.20
경영혁신형중소기업	7,105	4,604	3,223	305	15,237	36,111	21,479	20,607	292	78,489	5.15
기술혁신형중소기업	10,494	5,051	3,676	614	19,835	79,293	28,122	5,358	378	113,151	5.70
벤처기업	14,469	7,712	3,887	567	26,635	61,179	24,516	5,901	259	91,855	3.45
수출유망중소기업	473	136	66	28	703	3,485	166	61		3,712	5.28
여성기업(대표자기준)	47,665	32,044	20,525	815	101,049	34,286	24,027	57,666	291	116,270	1.15
여성기업(인증기준)	11,804	9,675	6,738	188	28,405	24,358	17,136	22,607	77	64,178	2.26
장애인기업	1,806	1,273	724	35	3,838	8,079	1,732	1,920		11,731	3.06
중소기업(소기업)	14,681	15,133	6,658	587	37,059	54,366	27,947	41,223	505	124,041	3.35
중소기업(소상공인업)	43,673	29,612	12,553	1,096	86,934	43,878	10,762	25,236	324	80,200	0.92
중소기업(중기업)	6,521	5,846	3,318	494	16,179	53,960	52,151	76,073	848	183,032	11.31

※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DW 통계시스템”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18.05)


- ☞ 여성 및 장애인기업 등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이전에 추가가치가 유사한 타 우선구매제도의 수혜를 받는 기업 및 단체들이 먼저 진입하여 실적과 경험을 보유한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이 가지는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우선구매제도 활용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수의 공공구매제도 지원 대상 기업들이 동일한 물품과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계약 또는 구매담당자에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의 필요성과 제품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4.3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활용현황

- ☞ 2017년 말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총 1,879개로 전체 인증기업 1,907개(2017년 12월 31일 현재) 대비 약 98.5% 수준의 참여율 기록하며 사실상 모든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 ☞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경기, 세종 등 수도권 인근 지역이 평균 100.0%로 모든 사회적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대구, 강원, 충북, 전남, 경남 등이 80%대 이하로 상대적으로 참여율이 낮다.
- ☞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단순 평균 공급실적(조달청 중앙조달실적 기준)은 2.20억원(사회적기업 제품 총공급실적/사회적기업 등록업체 수)이며 평균 이상 공급 지역은 서울, 부산, 세종, 경기도, 전라북도의 5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된다.
- ☞ 인증기업 소재지별 수요 및 공급 특성(수요기관, 대상품명 등) 분석을 통한 벤치마킹 및 차별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시도명 (2017년 기준)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수(누계)					사회적 기업 등록 업체수 (B)	평균 등록 비율 (A/B)	나라장터 계약 및 공급실적 (조회기간, 억원)					평균 금액 (억원) (C/A)
	물품	용역	공사	외자	계(A)			물품 실적	용역 실적	공사 실적	외자 실적	계(C)	
총계	847	916	112	4	1,879	1,907	98.5%	2,122	1,875	129		4,126	2.20
서울특별시	178	223	24	2	427	324	100.0%	961	315	56		1,332	3.12
부산광역시	39	42	4	0	85	89	95.5%	50	215	0		265	3.12
대구광역시	23	27	3	0	53	65	81.5%	38	51	0		89	1.68
인천광역시	57	68	7	0	132	110	100.0%	68	95	9		172	1.30
광주광역시	42	45	7	0	94	97	96.9%	30	47	1		78	0.83
대전광역시	30	32	2	0	64	50	100.0%	17	38	2		57	0.89
울산광역시	33	30	2	0	65	68	95.6%	27	64	2		93	1.43
세종특별자치시	6	5	1	0	12	10	100.0%	9	20	0		29	2.42
경기도	157	162	28	0	347	316	100.0%	641	509	23		1,173	3.38
강원도	35	47	7	0	89	105	84.8%	54	40	12		106	1.19
충청북도	35	34	5	0	74	84	88.1%	19	55	5		79	1.07
충청남도	42	38	1	1	82	91	90.1%	53	77	0		130	1.59
전라북도	47	62	8	0	117	118	99.2%	41	275	6		322	2.75
전라남도	31	20	1	1	53	94	56.4%	24	24	0		48	0.91
경상북도	44	30	6	0	80	123	65.0%	70	15	6		91	1.14
경상남도	26	34	4	0	64	84	76.2%	13	23	1		37	0.58
제주특별자치도	22	17	2	0	41	43	95.3%	7	11	6		24	0.59

※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DW 통계시스템”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18.05)

 현재 상대적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고 공급실적이 적은 지자체의 경우 향후 점진적으로 구매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구매계획, 기 공급 물품과 용역의 종류, 공급기업 등을 분석하여 자사에 차별화된 경쟁 요소 마련이 필요하다.

1.5 유사분야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 ☞ 2012년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공공기관의 실적 및 계획 보고 법제화 이후 연평균 46% 수준의 공급확대를 이루었다.
- ☞ 특히 2017년도는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 조달업체로 등록된 비율이 당해 연도 사회적기업 총 등록 수 대비 사실상 100% 수준 달성으로, 신규 사회적기업이 바로 공공조달 시장으로 진출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
- ☞ 이러한 실적 확대는 2012년 이후 매년 신규 등록되는 사회적기업 증가와도 동일한 추세로 실질적인 참여 확대에 따른 사회적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시장 공급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는 구매목표비율이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의무구매가 아닌 임의구매로, 2017년 말 기준 총 구매액 대비 2.04% 수준으로 2016년 1.80% 대비 약 0.24%p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약 27.4% 성장, 2015년 이후 연평균 25%p 이상 대폭 증가 지속)

[연도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비중 변화]

구분	총 구매액 [백만원,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백만원, B]	비율[% , B/A]	전년대비 증가율
2012년 실적	35,991,782	191,633	0.5	-
2013년 실적	38,858,926	263,186	0.68	37.34%
2014년 실적	37,225,488	355,026	0.95	34.90%
2015년 실적	38,496,886	595,727	1.55	67.80%
2016년 실적	41,117,067	740,139	1.80	24.24%
2017년 실적	46,309,231	942,800	2.04	27.38%

※자료 : 연도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12~2018.04)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 관리가 법제화 되어 실질적인 공공시장 참여 여건이 개선된 이후 연평균 증가업체 수가 2012년 전후 연평균 약 1.4배 수준으로 대폭 증가되고 있다.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나라장터 등록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나라장터(A)	29	173	197	378	502	618	667	927	1,217	1,615	1,879
인증기업수(B)	41	166	231	405	533	668	923	1,183	1,465	1,625	1,872
인증기업 증가	-	125	65	174	128	135	255	260	282	160	247
등록비율(A/B)	70.73%	100.00%	85.28%	93.33%	94.18%	92.51%	72.26%	78.36%	83.07%	99.39%	100.30%

※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DW 통계시스템”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18.05)

한정된 공공조달 재원으로 인하여 2017년 중소기업 전체 공공구매 계획은 약 1.3%p 증가한 86.2조원으로 예상(비율 소폭 상승했으나 실제 구매액은 1천억 원 증가)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또는 총구매액 기준의 구매목표비율 제도의 지속적 성장세는 상대적으로 한계체감하는 것에 비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는 임의구매임에도 불구하고 큰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이후 최근 몇 년간 공공 우선구매제도에 대해 효율적인 예산운영 관점에서 성과 평가 등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으나 2017년 출범한 현정부는 사회적경제영역 우선구매 확대 정책과 의지 표명으로 새로운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하여 주요 우선구매제도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녹색제품(친환경상품) 우선구매제도를 제외한 모든 제도가 법률상 구매목표비율을 초과달성하였다.

사회적기업 제품의 경우는 법률상 구매목표비율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유사 분야인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과 비교할 경우 구매목표비율에 있어 2배 이상 큰폭의 달성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목표비율 및 공급실적 현황]

우선구매대상*	근거법령	강행성 여부	구매목표비율	실적금액 (억원 '17년)	비율 (%)	소관부처
중소기업제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총구매액 대비 50% (전년대비 1.1%p 증가)	922,000	74.8	중소벤처기업부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의무	총구매액 대비 1% (전년대비 0.12%p 감소)	5,387	1.01	보건복지부
녹색제품 (친환경상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의무	구매가능 총구매액 대비 100% (전년대비 3.9% 증가)	28,456	46.1	환경부
기술개발제품 (NEP·NET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대비 10% (전년대비 1.8%p 증가)	45,000	13.7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생산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의무	총구매액 대비 1% (전년대비 0.1%p 증가)	15,000	1.2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생산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의무	총구매액대비 물품5%/공사3% (전년대비 0.9%p 증가)	99,000	8.0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기업생산품	사회적기업 육성법	임의	총구매액 대비 3%수준 권고 (전년대비 0.46%p 증가)	9,428	2.26	고용노동부

※ 자료원 : 각 부처별 우선구매실적 보도자료 분석(한국조달연구원, 2018.05)

☞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가 본격화된 2012년 이후 사회경제적 배려대상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 기업별 평균 공급실적 변화를 살펴 보면 사회적기업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인 223% 성장하였다.

☞ 반면 유사한 지원 범주로 볼 수 있는 소상공인업의 경우는 -3%, 소기업의 경우는 -6%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우선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별 업체당 평균 공급규모 변화추세]

구분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증감율 ('17-'12)
여성기업(인증기준)	2.26	2.18	2.13	1.99	2.18	2.17	4%
장애인기업	3.06	2.82	2.77	2.14	1.99	1.82	68%
중소기업(중기업)	11.31	10.14	8.59	7.83	7.93	8.99	26%
중소기업(소기업)	3.35	2.68	2.53	2.61	2.79	3.54	-6%
중소기업(소상공인업)	0.92	0.74	0.71	0.69	0.71	0.96	-3%
사회적기업	2.20	2.10	1.48	1.12	0.85	0.68	223%

※자료 : 조달청 “나라장터 DW 통계시스템” 분석자료(한국조달연구원, 2018.05)

1.6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현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관심 증가와 적극적인 구매행정으로 2017년도 구매액은 최초로 90조원대로 진입한 92.2조원을 달성하였으며, 구매비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총 구매액) 또한 74.8%로 '06년 제도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공공조달 구매액 대비 조달대상별 중소기업 공급실적 현황]

(단위 : 조원, 개)

구분	'15년	'16년	'17년
중기제품 구매액(비율)	85.5(71.7%)	86.1(73.7%)	92.2(74.8%)
총 구매액	119.2	116.9	123.4
대상기관	765	775	788

※ 자료 :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 구매목표(안)”(중소벤처기업부, 2018.04)

☞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한 기관은 772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98.0% 수준으로, 높은 구매비율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 법정비율 달성기관 비중 : ('15) 97.1% → ('16) 98.5% → ('17) 98.0%

☞ 우선구매대상인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의 공공기관 구매실적은 '16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4조 5천억원(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3.7%)으로 2016년 대비 22.4%(0.8조원)가 증가하고 법정구매율(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를 초과했다.
-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9조 9천억원(총 구매액의 8.0%)으로 2016년 대비 18.8%(1.6조원)가 증가하고 물품(8.3%)·용역(9.3%)·공사(7.3%) 분야별 구매율 역시 법정구매율(물품 5%, 용역 5%, 공사 3%)을 초과했다.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조 5천억원(총 구매액의 1.2%)으로 2016년 대비 16.4%(0.2조원) 증가하고, 법정구매율(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 총 구매액) 1%를 초과했다.

[중소기업 공공조달 구매액 대비 정책지원 분야별 공급실적 현황]

(단위 : 조원, %)

구분	'16년 실적			'17년 실적			구매액 증가율(% '16년→'17년)
	총구매액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총구매액 (중기물품)	구매액	비율(%)	
기술개발제품	(31.0)	3.7	11.9	(33.0)	4.5	13.7	22.4
여성기업제품	116.9	8.3	7.1	123.4	9.9	8.0	18.8
장애인기업제품	116.9	1.3	1.1	123.4	1.5	1.2	16.4

※자료 : "2017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및 2018년 구매목표(안)"(중소벤처기업부, 2018.04)

제2장

공공(국가 및 지방) 계약의 이해

- 2.1 공공계약의 의의와 특징
- 2.2 계약의 종류
- 2.3 내자구매(물품 및 용역) 계약

2.1

공공계약의 의의와 특징



2.1.1 계약의 의의

 계약의 개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되어 상대방인 사인(私人)과 공사, 제조, 구매,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제반 수요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사법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계약의 원칙

-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므로 민법상의 일반 원칙인 ①계약 자유의 원칙, ②신의 성실의 원칙, ③사정변경의 원칙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적용되며, 이에 대한 다툼도 민사소송 대상이다.

계약의 특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인 간의 계약과는 달리 공공복리 추구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체결되며, 이에 따라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 계약업무 담당자의 자의적인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 질서를 엄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공익성, 공정성, 경제성 확보가 요구되므로 계약관계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공공계약 관련 법령체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체계
 - ① 법 35조문 ② 시행령 9장 118조문 ③ 시행규칙 8장 87조문
 - ④ 행정규칙 129건(예규, 고시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체계
 - ① 법 43조문 ② 시행령 9장 140조문 ③ 시행규칙 8장 87조문
 - ④ 행정규칙 13건(예규, 고시 등), 자치법규 154건

공공계약 적용대상 기관

- 공공구매제도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공구매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공공계약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 정부 및 지자체 모두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볼 수 있으나 계약관계 법령상으로는 국가 및 중앙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다.
- 이는 공공구매를 통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입찰 및 낙찰의 방법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회적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또는 향후 공급하고자 하는 지역과 기관이 어떤 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지 명확히 알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1) 직접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중앙관서(국고금관리법 제2조 및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기관) 및 그 산하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 유치원 및 국립학교 국가기관이 계약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법인

2) 준용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 지방계약법 적용대상 기관

1) 직접 적용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지방계약법 제2조)
 - 시·도 및 시·군·구
 - 특별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가 계약 사무를 위임 위탁한 기관 법인
- 교육행정기관(지방계약법 제3조)
 - 시·도 및 시·군 구의 교육청
 - 초·중·고등학교 중 공립학교

2) 준용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3조의3)
- 지방공사 공단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 기타 다른 법령, 규정 등에서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는 기관

2.2 계약의 종류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 대상 : 물품 · 공유재산의 매각, 청사 임대, 리스 등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과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구분

구 분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낙찰자	최저가,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등
계약보증금	대가를 일시에 선납받는 경우 불필요	필요
대가지급	선납원칙	계약이행후 지급, 선금지급
입찰보증금	필요(면제 가능)	필요(면제 가능)
예정가격	· 작성 · 일반재산인 경우 2인 이상 감정평가	· 작성 · 2억(전문1억원, 전기공사8천만원) 미만 공사, 5천만원 미만 용역 · 물품 수의계약 시 생략 가능
하자보증	불필요	필요
지연배상금	부과	부과

☞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계약목적물별	계약체결형태별	경쟁형태별	경쟁입찰의 낙찰자 결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제조 · 구매계약 ○ 용역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용역 - 일반용역 ○ 공사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 - 소방공사 - 문화재공사 - 환경관련공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계약, 개산계약 ○ 총액계약, 단가계약 ○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 등 ○ 회계연도개시전계약 ○ 단독계약, 공동계약 ○ 종합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입찰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입찰 - 제한경쟁입찰 - 지명경쟁입찰 ○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에 의한 구분 - 내용에 의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입찰 - 적격심사입찰 - 턴키, 대안입찰 - 기술제안, 공모 - 협상에 의한 계약 - 최적가치 낙찰 ○ 용역,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에 의한 계약 - 적격심사 - 2단계 경쟁입찰 - 희망수량 경쟁입찰 - 설계공모 ※ 중소기업자간경쟁입찰


☞ 세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중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실적 집계는 물품 및 용역계약 구매실적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2.3 내자구매(물품 및 용역) 계약

☞ 공공조달 대상 중 물품과 용역을 통합하여 내자라고 하고 이를 구매하는 방법을 내자구매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은 물품과 용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약체계와 세부적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3.1 내자구매 개요

 정의 : 내자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거나 국내자본으로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을 말한다.

 조달대상으로서 물품의 분류는 제조와 공급물품으로 구분된다.

- 제조물품은 직접생산확인요건을 갖춘 조달업체가 설계도, 규격서 등에 따라 제작 및 제조하여 공급하는 물품이다.
- 공급물품은 상용화 및 규격화 수준이 높은 시중 일반 거래물품으로 별도의 제작 요구 없이 사전 생산된 물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물품이다.

 조달대상으로서 용역의 분류

- 용역은 업무편의상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되는데, ‘기술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9호, 소방법 제61조의 2·3, 측량법 제2조 제1호 등에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이며 이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분	종류
일반용역	정보통신관련 용역 폐기물처리 용역 시설물 관리, 청소, 경비 용역 조경관리 용역 육상운송 용역 학술연구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광고 및 디자인 용역 감리 및 검사 용역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보험 용역
기술용역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 기술용역의 종류

- 건설기술용역(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 제1호)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 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기타
 -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설계·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설계·감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한 측량

- 일반용역의 종류 : 일반적으로 기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용역은 일반용역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정보통신용역은 SW사업 또는 정보기술용역이라는 별칭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 | | |
|-------------------|----------------|
| - 정보통신관련 용역 | - 학술용역 |
| - 폐기물처리 용역 | -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 - 시설물 관리/청소/경비 용역 | - 장비 유지보수 용역 |
| - 육상운송용역 | -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 일반용역의 낙찰자 선정방법은 주로 적격심사제도(세부 내용은 2장 참조)가 활용되고 정보통신관련 용역, 학술용역 등 지식기반, 기술성, 전문성이 높은 용역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 등이 적용된다.

정보통신관련 용역

» 개요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동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수단을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관련장비의 유지보수용역과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으로 구분된다.

» 업무영역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시스템을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창작활동을 말하며, 개별용역은 응용 S/W의 개발에 중점을 둔다.

- 기본 S/W : 운영체제(O/S), DBMS 등
- 응용 S/W : 범용 S/W(반제품, 완제품), 전용 S/W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

정보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각종 시설 및 설비 등의 환경을 구축하는 설계업무 및 공사를 말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로서 가치가 있는 원시자료(콘텐츠)를 수집, 분류 및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로 설계하여 수집한 자료를 가공, 제작 및 서비스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을 말한다.

자료입력

전산화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정보전략계획 수립

본격적인 시스템 통합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산장비 유지·보수

주전산기와 주변기기, 네트워크, 기본·응용 S/W 등 관련 전산장비 및 S/W일체에 대한 유지·보수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폐기물처리 용역

» 개요

폐기물처리용역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종류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 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업의 종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 폐기물중간 처리업
폐기물중간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영업
- 폐기물최종 처리업
폐기물최종처리 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배출을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 폐기물종합 처리업
폐기물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시설물관리/청소/경비 용역

» 개요

시설분야 용역이라 함은 청소(위생관리)업무, 시설경비업무, 시설(물)관리업무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각각 또는 2종류 이상의 용역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나의 같은 계약으로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 종류

시설물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시설물경비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또는 일부를 말한다.

청소·위생관리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과 동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육상운송 용역

» 개요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 종류

- 화물운송
- 인원운송
- 택배
- 차량 입찰
- 육상운송장비 임대 등

학술 용역

» 개요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 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 종류

- 사업 또는 산업의 타당성 조사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 조직설계·제도 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 포함)
-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분석
- 경영분석·경영진단·경영평가
- 원가계산
-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
-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 기타 이에 준하는 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 개요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조사, 기획, 설계, 구성, 제작, 시공감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이러한 시설의 내장, 외장, 전시장치, 기계설비(음향, 영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 종류

행사 기획 및 대행

박람회, 축제, 회의, 기념식, 포럼 및 워크숍 등 각종 행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전시관 및 홍보관 설치

전시회, 박람회 등의 전시관 또는 홍보관을 설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 개요

장애 발생에 따른 발생 원인 파악·조치, 정지 및 기능 저하를 미연에 방지, 사용방법의 개선 등을 통해 운영 효율의 극대화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역을 말한다. 이를 위해 유지·보수업체는 정기 예방점검, 부품의 정기적 교환, 이력관리, 신속한 고장처리, 기술상담 등의 업무를 이행한다.

»» 종류

- 정밀·계측·관측장비 유지·보수
- 통신장비 유지·보수
- 기타 각종 장비 유지·보수 등

광고 및 디자인 용역

» 개요

광고주를 대리하여 광고에 관련된 시장조사 및 광고기획, 광고물제작, 매체선택, 매체와의 광고계약, 광고물을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정기간행물, 신문 등의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대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광고용 설치물(광고탑 등)을 임대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 종류

인쇄광고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쇄물을 통해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한다.

방송광고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방송을 매체로 하여 홍보하는 광고 관련 용역을 말한다.

공중광고

전시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 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용역을 말한다.

인터넷·통신광고

기업이나 개인, 단체가 상품, 서비스, 이념, 정책 등을 인터넷 및 통신 매체를 통해 홍보하는 광고관련 용역을 말한다.

디자인

특정 메시지, 이미지 또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전달하거나 가상현상 등을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전달 또는 표현하기 위한 시각전달매체를 기획, 디자인 및 관리하는 용역을 말한다. 비디오화면 구성 및 기업로고 등의 디자인, 기술적인 정확성 또는 해석기술이 요구되는 설명도 및 삽화를 제작하는 업무도 포함된다.

2.3.2 내자구매 조달요청 범위

조달요청 대상 및 범위

구분	조달청 구매	수요기관 구매
국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이상의 물품 및 용역 및 임차, 대여 포함 • 단기계약된 물품(MAS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미만의 물품 • 긴급구매물자(천재/지변 등) • 국방목적 수행 등 비밀을 요하는 물자 •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함이 적합한 용역 • 조달청장이 구매위임한 경우 등 • 음식료품류, 동·식물품류, 농수산물 • 무기 등 총포, 화약류와 그 구성품 • 차량용 유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계약된 물품(MAS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계약 이외의 물품
공기업·준정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청 구매 대상 이외의 물품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수요기관(공공기관)에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급기회와 관련된 구매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으로 분류되는 모든 수요기관은 1억원 이상 물품 및 용역의 입찰과 다수공급자계약을 포함하여 단기계약 된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해야 한다.
 - * 특히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경우 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국가기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므로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제도로 볼 수 있다.
- 이외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므로 구매계획, 입찰 정보 등에 대해서는 개별 수요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입찰공고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 기본적으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인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정보가 게시되나 구매와 관련된 세부적인 절차는 수요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조달청이 아닌 각 지자체별 자체 조달을 통해 물품과 용역의 구매가 가능하나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조달청에 등록된 물품이 있는 경우 가급적 종합쇼핑몰을 이용해서 구매하고 있다.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과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기관들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기획재정부 고시금액(2.1억원) 이상 경우에만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으로 등록된 경우 조달청 종합쇼핑몰을 통한 구매가 일반적이다.

2.3.3 내자구매 계약방법

✓ 7계약방법 분류

경쟁계약

구분	계약방법	해당사항
일반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한 자격을 가진 희망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토록 한 후 그 중에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입찰방식의 기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입찰목적물의 제조·공급에 필요한 시설, 점포를 소유하고 있는자 •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등을 받은 자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제한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지역 중소기업자 여부 등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가격을 제한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제조 용역에 대한 지역제한 • 특수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로 물품제조실적 제한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재무상태 등에 의한 제한입찰
지명경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등에서 경쟁입찰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케 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성질·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기술실적을 갖춘 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 1억원 이하의 물품제조사 • ks 표시품, 재활용제품 등 제조 구매시 • 중소기업간 경쟁지정물품 • 5인 이상 지명하여 2인 이상 참가승락

일반경쟁계약

- 계약대상물품의 규격 및 시방서와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널리 공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불특정 다수인의 입찰희망자를 모두 경쟁입찰에 참여시켜 국가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한경쟁계약

- 일반·지명경쟁계약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경쟁에 따른 장점을 취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키 위한 제도로서 일반 및 지명경쟁의 중간적 성격의 계약제도이다.

- 근거 국가계약령 제21조 제1항
- 국가계약규칙 제24조
-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제2조 제4호 및 5호
- 대상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
-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제조·구매·용역, 기타계약으로 지역제한이 필요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 (중소기업자간 경쟁대상 품목)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 제한기준으로는 실적에 의한 제한, 기술보유상황에 의한 제한, 지역제한, 중소기업보호를 위한 제한, 재무상태에 의한 제한 등이 있다.

지명경쟁계약

- 계약담당공무원이 신용과 실적 등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특정다수의 경쟁참가자를 지명하는 입찰방법에 의거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제한경쟁과 함께 일반경쟁계약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방법이다.
- 이 제도는 신용과 실적 및 경영상태가 우량한 업체를 지명하기 때문에 계약이행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매계약에 소요되는 경비 절약 및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한편 비교적 긴급구매의 장점이 있다. 다만 입찰참가자를 지명함에 있어 특정인이 지명됨으로서 특혜 시비와 경쟁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 입찰 시 경쟁의 방법을 기준으로 한 계약은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의 방법이 일반적이다.
- 중소기업자간경쟁제도, 소기업우선조달제도 등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다.
- 사회적기업으로 50인 미만의 소기업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면서 물품 및 용역 입찰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만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입찰 및 계약이 진행된다.

수의계약

-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전자입찰 : 계약담당자 PC)

구분	개념	참가자격 및 기준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등 긴급수요비밀유지·추정 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 용역생산소 지자가 1인인 물품 등에 대하여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 그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특수 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비밀물자 •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등으로 인하여 경쟁할 수 없는 경우 • 5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 구매, 용역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제조 공급하도록 하는 경우 <p>〈참가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재공고에 의한 수의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는 등 입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계약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소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p>〈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참가자는 물론 당해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자로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 <p>〈참가자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경쟁 참가자격과 동일함

- 공공조달 입찰에서 경쟁의 방법 이외에 특정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비경쟁적 방법인 수의계약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현재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공공조달 일반 또는 우선구매제도에서 의무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은 없다.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반드시 체결해야하는 강행규정이 아님)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각항 각호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26조의 각항 각호에 따라서 엄격히 적용되어야 한다.
- 2015년부터 수의계약 중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 대한 나라장터시스템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1인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 및 용역의 수의계약 상한 기준 금액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되었다.
 - * 사회적기업으로서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입찰건에 대해서는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요청할 수 있다.(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강행적 의무규정은 아님).

기타 계약체결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해당사항
당해연도계약	• 당해연도 세출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통상적 계약
장기계속계약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 총사업에 대한 범위는 확정되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로서 총이행 금액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계약
계속비계약	• 전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고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계약으로 총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하고 연부액을 부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 이전에 예정가격 등을 작성하고 입찰(또는 시담)을 통해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일반적인 계약의 형태
개산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개발 시제품, 제조계약에 대하여 계약이행 후 계약금액을 정산하는 조건으로 체결하는 계약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정할 수 없는 일부 비목을 계약 이행 후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는 계약
단독계약	• 1명만이 계약자로 결정되는 가장 일반적인 계약
공동계약	• 2인 이상의 계약자가 일정부분을 서로 공동(분담)하여 체결한 계약

※개산계약은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해 사전 가격확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며,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은 일부 비목에 대한 가격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

- 기타 계약이행 기간에 따라 당해년도, 장기계속, 계속비계약 등으로 구분되고 계약금액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액이 확정되는 확정계약, 계약금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 등으로 구분된다.
- 사회적기업들이 유의미하게 활용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계약방식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과 같이 계약이행의 주체가 단수인지 또는 복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방법이다.
- 계약자 1인이 단독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를 단독계약이라하며, 2인 이상의 복수의 참가자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공동계약이다.
 - * 일반적으로 복수의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찰공고문에서 계약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함을 명시하였을 때 활용 가능하다.
- 사회적기업의 경우 생산역량 등이 일반적인 기업들에 비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특정 사회적기업의 생산 또는 공급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의 계약조건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해당 입찰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한 경우 동일 물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확정계약

- 계약체결 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 내에서 입찰 또는 수의시담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이다.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되지 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 개산계약 대상 : 국가계약법 제23조 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 시험 · 조사 · 연구용역계약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 등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국가계약법시행령 제73조)

-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전체에 대한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개산계약과는 구별된다. 조달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품목의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 조건으로 구매추진하고 있으나 특별히 가격조사가 어려운 일부품목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한다.

- 사후원가 검토조건부 계약대상 : 조달청수요물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66조(사후원가검토)

- 수입자재를 주재료로 사용하는 물품
- 세부규격이 불분명하여 원가변동 요인이 있는 물품
- 가격자료 미비로 예정가격 기초조사가 미흡한 품목
- 기타 사후원가 검토가 필요한 품목

공급방법별 분류

구분	개념	대상물품
총액계약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체결하는 계약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단가계약	• 여러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체결 • 조달청에서 계약자에게 납품 요구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공급되는 물품(철근, 시멘트, 레미콘, 이스콘 등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3자 단가계약	• 계약방법의 특례로서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물자로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	• 행정사무자동화 기기, 우수제품 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공급되는 물품(전자복사기, fax 등)
다수 공급자 계약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성능·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	•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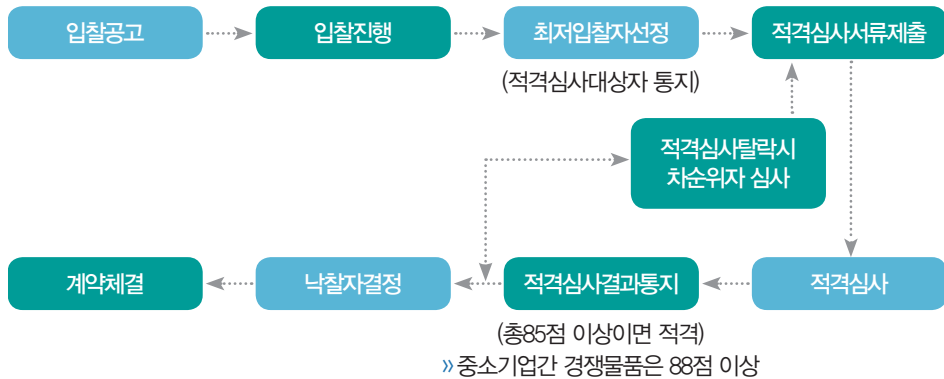
- 공급방법의 관점에서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약은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수요기관들이 공통적, 반복적, 상시적인 수요가 있는 물품 중 상용화 및 규격화 수준이 높아 시장에서 품질 및 가격 등이 검증된 물품과 용역을 중심으로 사전에 공급조건 및 단가 등의 계약조건을 설정하여 조달청과 조달업체가 계약을 체결한다.
- 다수공급자계약은 단가계약 또는 단가계약과 유사하나 실제 계약의 효력으로 납품과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수공급자계약 시점이 아닌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조달업체의 물품과 용역을 실제 수요기관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이 납품을 요구하는 단계라는 점에서 특징점이 있다.

2.3.4 내자구매 낙찰자 결정제도

적격심사제도(물품 및 용역)

-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평점을 받은 우량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써, 이행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업체가 덤핑입찰에 의한 낙찰을 예방하고 계약 이행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업체의 경영 합리화 및 품질 향상을 유도한다.

• 계약절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공조달 대상인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기본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42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것이다.
-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공공조달 분야에서 물품 및 용역 분야에서 순수한 의미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즉 가격 만으로 계약 상대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는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
- 반면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도가 물품 및 용역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용역에 대해서는 “기술용역 적격심사,” 또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평가하고 있다.
 - * 적격심사는 물품 및 용역 구매 금액의 규모에 따라 3단계 내외로 차등적인 기준이 설정되고 각 단계별로 설정된 최저 입찰 가능금액 수준인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입찰자로서 각 단계별로 설정된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 사회적기업들이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낙찰방법인만큼 사전 평가기준 및 가격평가방법 등을 확인하여 낙찰 가능성 여부 및 부족한 적격심사점수를 보완하기 위한 신인도 가점 항목 등으로 보완하는 방법 등을 선제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종합낙찰제(물품)

- 입찰가격 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찰가격에 총에너지 소모비를 합한 금액이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제도이다.
- 대상품목(6종) : 펌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송풍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 제품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절약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 업체별 가격·성능·환경환산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가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대상품목(9종) : 에어컨, 세탁기, LCD모니터, 데스크탑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프린터, LED램프, 공기청정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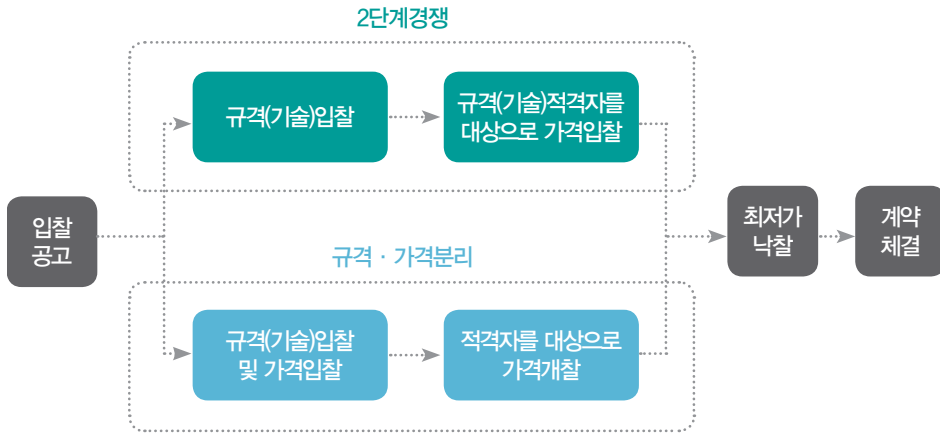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

- 2단계 경쟁 및 규격·가격동시 입찰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입찰방법으로서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 2단계 입찰('95.7.6부터 시행)
 - 발주자가 적절한 규격의 작성이 어려운 경우 1단계에서 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적격자를 판단한다.
 - 2단계에서 적격자로부터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 규격·가격 동시입찰('77.4.1부터 시행)
 - 2단계 입찰과 유사하나, 입찰방식에 차이가 있다.
 - 규격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받고 1차 규격입찰서를 개봉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 입찰집행관이 보관하고 있는 규격입찰서 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구분	입찰 방식	입찰 유·무효	낙찰자 결정
단계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기술)입찰을 먼저 실시, 적격자 선정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단계별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 낙찰
규격·가격 동시입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기술)입찰과 가격입찰을 동시 실시 ·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격과 가격입찰 2인 이상의 유효입찰 · 규격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개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 낙찰

• 계약절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2단계 및 규격가격 동시입찰은 1단계에서 입찰자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적격자에 대해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이다.
- 일반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물품과 용역의 이행을 위한 기술력, 복잡성, 전문성,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 적격자에 한해 입찰자격을 부여하여 기술 및 품질 중심의 낙찰자를 선정하려는 제도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 낙찰방식이므로 해당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사전 기술역량 수준과 공급 가능 가격 수준을 결정하여 입찰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최종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이 최저가 방식이므로 과당경쟁 등으로 인한 저가 낙찰 등의 문제점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청소용역 등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희망수량 경쟁 입찰(물품)

- 1인의 계약자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량물품을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단가)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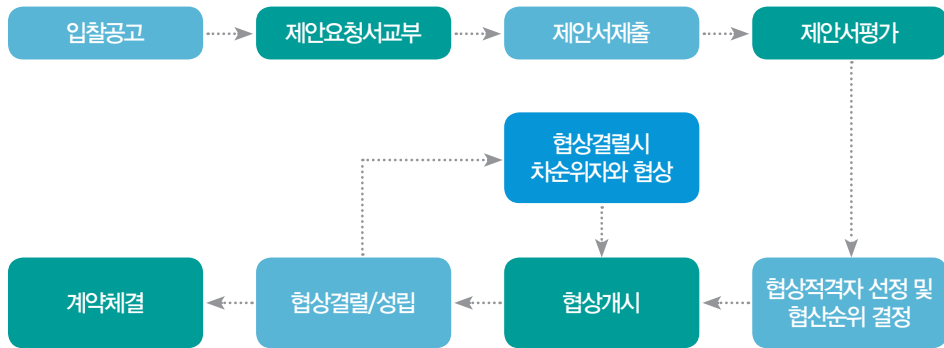
협상에 의한 계약(물품, 용역)

- 계약이행 과정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물품/용역에 대하여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 기술점수(80%)와 가격점수(20%)를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배점은 조정이 가능)

-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특히,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계약절차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주로 용역분야의 입찰에서 활용되는 낙찰자 결정방법으로 주로 양적평가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적격심사제도의 용역이행능력 심사를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에서 질적중심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 일반적으로 학술성, 기술성, 전문성, 복잡성 등이 높은 용역분야에서 기술능력 등 종합적 이행능력이 뛰어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한 방안이다.
- 적격심사와 달리 가장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입찰자에게 심사 우선순위가 있지 않고 기술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수요기관이 사전 공지한 기준점수 이상 통과자 중 최고점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 * 기술능력 등 종합적인 이행역량이 뛰어나 낙찰업체로 선정될 경우 대가보장 수준이 가장 높은 낙찰제도로 볼 수 있다.
- 원칙적으로 물품 및 용역에 모두 적용될 수 있고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에서는 시설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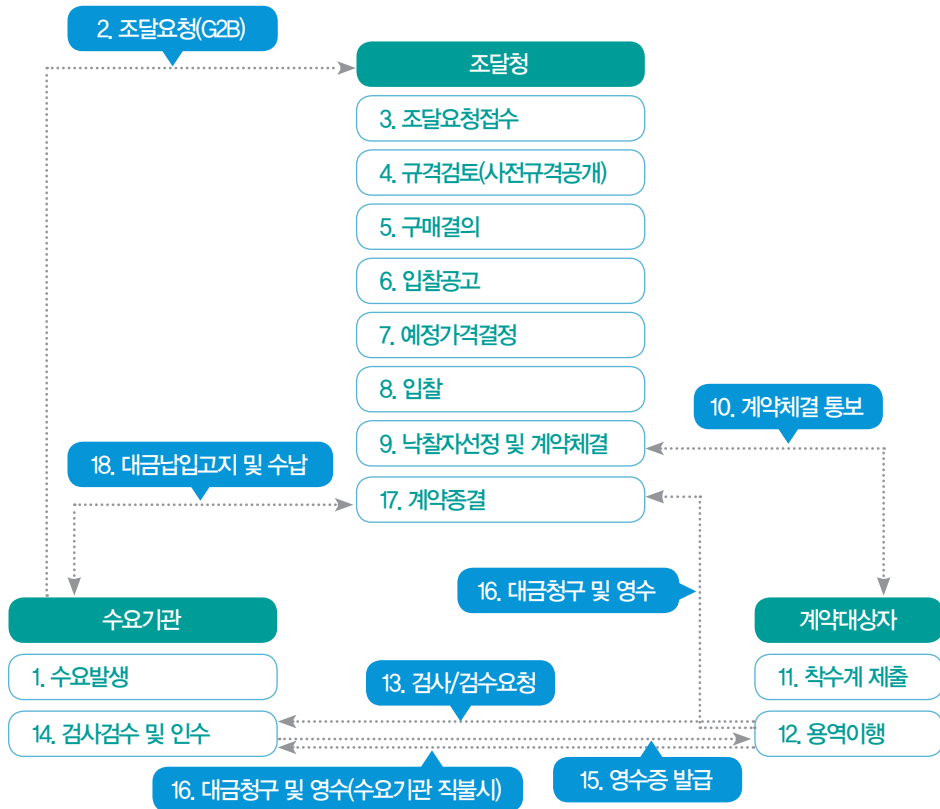
리스계약 제도(물품)

-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리스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리스 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동안 정기적으로 일정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제도이다.(물품구매 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이용)

특정조달계약(국제입찰)

-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물품, 공사 용역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적의 외국인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제도이다.(정부조달협정 : '94. 4. 15 마라케시)

2.3.5 내자구매 업무 단계별 처리절차



1. 수요발생

수요발생은 수요기관의 사업목적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해당예산을 확보함으로써 발생한다.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을 활용하는 수요기관(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시설공사의 조달은 해당 연도의 필요 시점에 즉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전년도 말 대략적인 조달계획을 수립한다.
- 수요기관별 연간 조달 및 구매 계획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거나 수요기관의 계약담당부서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급을 목표로하는 지역의 수요기관의 구매정보를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입찰 등 공공조달 시장 진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청으로 조달요청하는 경우에는 매해 연초에 나라장터를 통해 수요기관별 연간 조달요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여 선제적으로 물품 및 용역 공급기회를 탐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조달요청[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수요기관의 장은 품명, 규격(시방서), 납기, 특수조건 및 추산가격, 배정예산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 반영 여부 등을 기재하여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해 조달 요청한다.

3. 조달요청 접수(나라장터)

조달요청서는 본청 및 수요기관을 관할하는 지방청에서 접수하며 접수와 동시에 나라장터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 공개 제외 대상

-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수의계약대상물품
- 구매예상가격이 1억원 미만인 내자
-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품목

● 공개기간

- 접수일로부터 5일간(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음)

4. 규격검토

정부물품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경쟁이 가능한 규격으로 구매한다. 그러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물품이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각호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거 구매할 수 있다.

5. 구매결의

검토가 끝난 조달요청서는 구매결의서를 작성하며, 구매결의서에는 다음사항을 포함한다.

가. 구매관리번호

나. 수요기관명

다. 정부물품목록번호, 품명, 규격, 수량

라. 계약방법

마. 낙찰자 선정방식(적격심사, 종합낙찰제, 2단계입찰, 분리입찰, 유사물품복수경쟁 등)

바. 법적근거

사. 예산금액 또는 추정가격

아. 협정물자(특정조달) 대상여부

자. 입찰일시(경쟁입찰시)

차. 납품기한 또는 계약기간, 납품장소, 인도조건, 검사 및 검수기관 이외에도 물품구매입찰의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입찰보증금 수납에 관한 사항 등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조달청을 기준으로 구매결의 이후 입찰공고 이전에 물품 및 용역의 규격 및 과업내용의 적정성과 관련 법제도 준수여부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구매규격 사전예고”를 하고 있다.
-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과 용역의 물품 규격서 또는 용역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내용 중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거나 관련 법규 및 대가산정기준(품셈) 등과 상이한 경우 수요기관의 담당자에게 공개적인 의견 제시 및 질의를 할 수 있다.
- “구매규격 사전예고” 단계에서 조달업체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 및 반영 여부를 담당자가 회신토록 되어 있고 이후 입찰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 특별한 의견이 없더라도 실제 물품 및 용역 입찰공고 이전 7~10일 이전에 곧 입찰에 부처질 정보를 사전 획득하여 입찰공고기간을 더한 기간만큼 제안서 작성 등 입찰 준비를 여유있게 할 수 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2조의 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국가기관을 시작으로 모든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 5일, 긴급한 경우 3일 이상 구매규격(제안요청서, 기술규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 공공조달 입찰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제도 지원 대상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인지하고 활용해야 할 계약과정 중의 하나이다.

6. 입찰공고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에 명시할 사항 (영 제36조)**

- ① 입찰에 부치는 사항
 - ②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 ③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④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⑤ 낙찰자 결정방법
 - ⑥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⑦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 ⑧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⑨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 ⑩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 ⑪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장소
 - ⑫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 계약의 이행방식
 - ⑬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입찰공고 내용과 당해 물품규격서 내용이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내용을 기준한다.(질의회신, 회계 125-3685)

● **공고시기 (영 제35조)**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 이전 공고가 원칙이다.
- * 협상계약의 공고기간은 일반 경우 40일 이상, 긴급인 경우 10일 이상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참가 신청마감일(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신청서와 함께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한다.
- 다만, 신용거래불량자,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외에는 입찰보증금이 면제이다.
- * 입찰참가 신청서 : 입찰 보증금 납부서, 입찰 보증금 면제 약속서, 대리인 위임장, 사 용인감계 등이 포함

● 입찰참가자격 기준일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을 기준하되, 현장설명 참가가 의무화된 공사는 현장설명일을 기준으로 한다.

● 대리인의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및 입찰개시시각 전까지 대리인을 지정(변경 포함)한 경우에는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 *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대리인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효과적인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입찰 공고 시점에서 물품과 용역의 구매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충분한 사전준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낙찰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 입찰이전 단계에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을 어떤 기관이 언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사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공급 가능여부, 입찰을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 및 요건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러한 측면에서 공급하고자 목표로 하는 수요기관의 직전연도를 중심으로 최근 3년 간의 물품 및 용역 입찰정보를 나라장터에서 검색하여 정보를 획득하고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요건 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7. 예정가격 결정

예정가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 또는 수의시담을 하기전에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계약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가격으로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정한 가격을 말하며 동 가격은 입찰 또는 시담에 의한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며 계약체결에 대한 최고 상한금액이 된다.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 경쟁입찰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 기초금액과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한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초금액을 작성(영 제9조)하고 나라장터로 공개한다.
 - * 단, 협상계약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금액의 $\pm 2\%$ (국가계약법적용 입찰) 또는 $\pm 3\%$ (지방계약법 적용입찰)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이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한다.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실제 당해 물품 및 용역 입찰의 기준가격은 기초금액 또는 사업예산이 아닌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정가격이다.
- 예정가격은 낙찰단계에서 적용받는 적격심사,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등에서 낙찰하한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입찰공고 시점에 공개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 범위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 대략적인 예정가격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낙찰을 목적으로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경우 적격심사에서 낙찰하한율 미달로 적격심사 대상 자체가 되지 못하므로 기초금액, 복수예비 가격 산정범위(국가계약법 $\pm 2\%$, 지방계약법 $\pm 3\%$)를 고려한 예정가격을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낙찰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과정이다.

8. 입찰

입찰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시간과 장소에서 실시한다.

● 재입찰(영 제20조 제1항)

- 최초에 부친 입찰이 유찰된 경우 다시 공고절차를 가지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재차 입찰에 부치는 제도이다.
- 처음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도 재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다.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전자입찰로 진행되는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는 “지문인식 전자입찰”을 시행하므로 입찰 이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과 지문등록을 완료하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9.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

경쟁입찰은 입찰 후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자와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대상자와 권리, 의무 변동(발생, 변경, 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 전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한다.

● 계약보증금(영 제50조)

- 계약금액(장기계속은 총 금액, 단가계약은 1회 최대납품요구액)의 10% 이상
- * 용역의 경우 공사 계약보증금 규정 준용 가능
- 납부수단 : 현금 또는 영 제37조 제2항에 의한 보증서 등
-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

10. 계약체결통보

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문서(계약서)에 인지를 붙임으로 서 납부케하고 계약당사자 및 수요기관에게 송부한다.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로 생산대금 등을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는 공공구매론(자세한 정보는 3장 공공구매론을 참조)을 이용할 수 있다.

11. 납품준비

계약당사자는 계약서에 따라 물품을 납품하며, 계약물품은 계약서 규격, 시방서 및 제반 조건 등에 맞도록 제작한 물품을 공급한다.

12. 납품

계약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을 완료한 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13. 물품납품 및 검사/검수요청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계약목적물에 대한 검사/검수요청을 납품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한다.

14. 검사·검수 및 물품 인수

“검사”는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의거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이며, “검수”는 검사에 합격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는 검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한다.

15. 물품 납품 및 영수증 발급

물품을 인수한 수요기관에서는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발급하며, 계약조건에 따른 유보금 및 공채매입 여부 등 대금지급 시 참고할 내용을 부기한다.

16. 대금청구 및 영수

수요기관에서 검사검수가 완료되어 물품 납품 및 영수증, 기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계

약자가 조달청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반기재 사항, 계약물품의 규격 및 수량, 납품기한 대 실제 납품일, 하자보증금 적립여부, 계약자에게 지급될 금액에 관한사항 등을 확인 후 대금을 청구한다. 다만, 수요기관 직불의 경우에는 해당 수요기관에서 대금청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17. 계약종결

납품서류 확인 결과 하자가 없거나 보완이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종결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종결 및 분할납품이행 내용(수요기관 직불의 경우는 수요기관 통보 내용)을 조달 EDI에 입력 한다.

- 경영분석담당관은 해당계약과에서 지급을 의뢰한 계약종결 서류를 확인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하고 계약자에게 지급(계좌입금)한다.

가.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액

나. 선금잔액

다.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라. 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기타 설치 및 시운전 미필 등 일부 유보할 사유가 있는 경우)

마.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

* 라, 마 항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음

- 납품대가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국가계약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에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 조달청은 위 대가지급기한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유효한 서류를 갖추어 대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4근무시간 내에 지급한다.

18. 대금납입고지 및 수납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대금과 해당 조달수수료를 가산하여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고(수요기관 직불의 경우는 해당 수수료), 수요기관은 동 금액을 국고수납대리점에 납부한다.



제3장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 3.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3.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 3.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3.1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 개요

✓ 정의

☞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서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써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중 사회적기업이 공급가능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

✓ 의의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 일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촉진한다.

☞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다.

- 지역 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 지역순환 경쟁체계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윤리적 소비 제공 및 위상을 정립한다.


- ‘착한소비’ 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지를 제고한다.


✓ 목적

 공공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효성을 제고한다.

✓ 법적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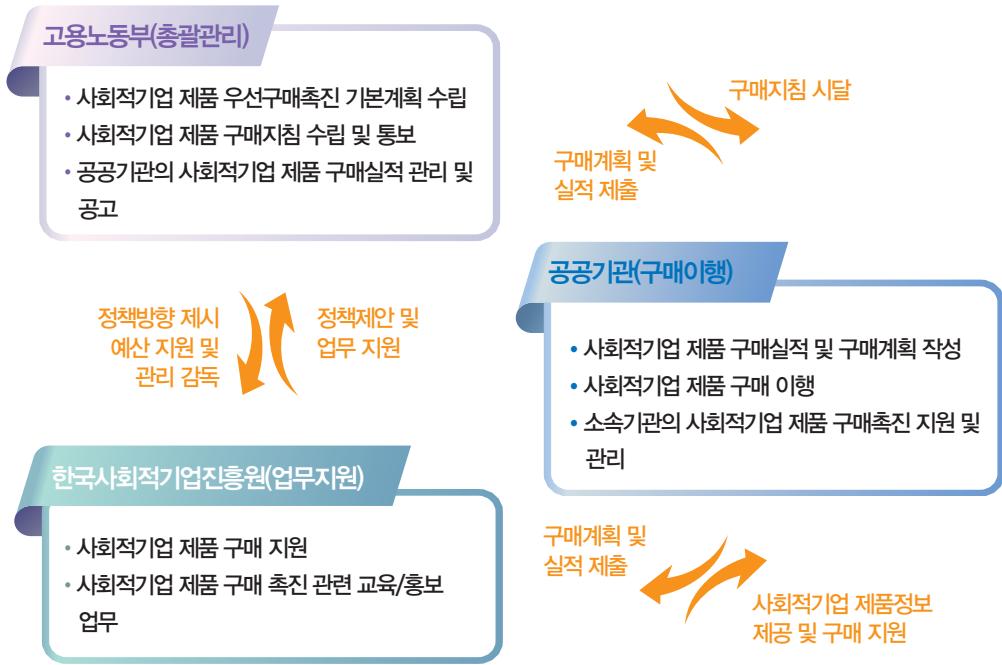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추진체계



✓ 대상 공공기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총 832개 공공기관(2017년 12월 기준)


총계	국가 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 기관	기타 공공 기관	지방 공기업	지방 의료원	특별 법인
		광역시	기초							
832	53	17	226	17	35	88	207	149	34	6

✓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 '18. 05월 기준 1,937개소(자치단체·정부부처가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는 다른 개념)

〈참고 :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구분	사회적기업 인증
표시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상의 요건을 갖춘 조직을 인증절차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 명의로 인증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사회적기업 인증) 및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절차)
인증기준	조직형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유급 근로자 고용,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 결정 구조, 정관규약 등 구비 및 기재사항 준수 여부 (상법상회사·합자조합인 경우 :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
인증기관	고용노동부



3.2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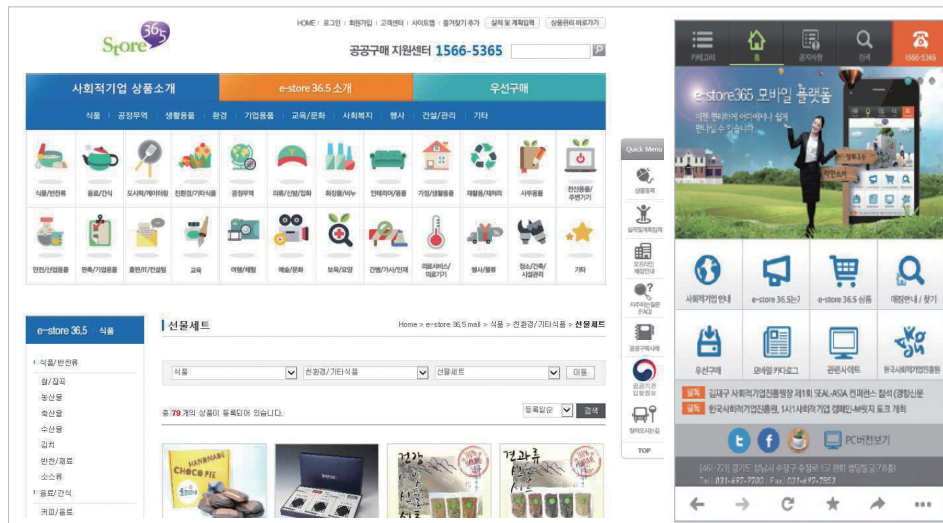
공공(수요)기관이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수요의 발생, 구매대상 품목 확인, 구매방법 결정, 실제 구매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공급전략 수립에는 아래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1단계 : 구매대상 품목 확인

1. 온라인 : 사회적기업 상품 소개 사이트(www.e-store365.or.kr)
모바일웹(m.e-store365.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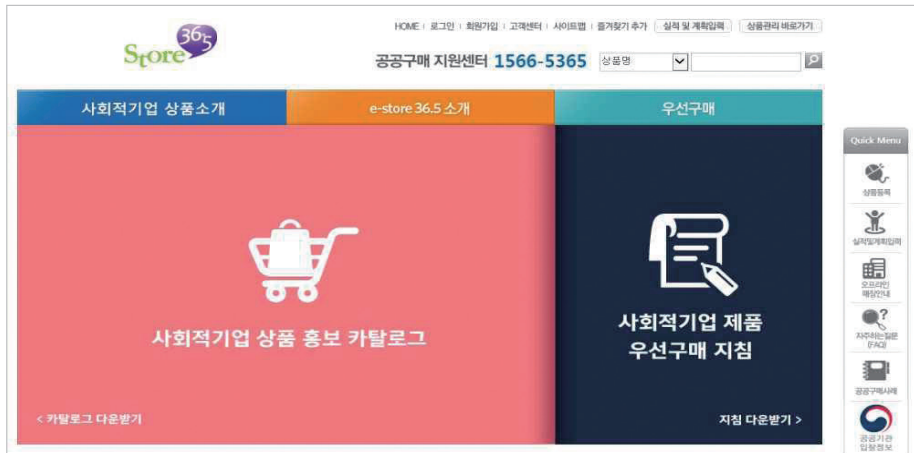


통합검색으로 찾기 : 메인화면 상단의 '검색' 창을 활용하여 상품정보, 사회적기업, 전시판매장 등 모든 정보가 검색이 가능하다.

※ e-store36.5 소개 초기 화면 또는 e-store36.5 소개 > 커뮤니티 > 알림마당, 자료실에 게시한 '사회적기업 상품 홍보 카탈로그' 등을 활용

-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위한 상품 탐색정보의 기준점으로 e-store36.5 웹사이트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 조달청 나라장터의 경우 다수공급자계약물품으로 등록된 사회적기업의 제품만 검색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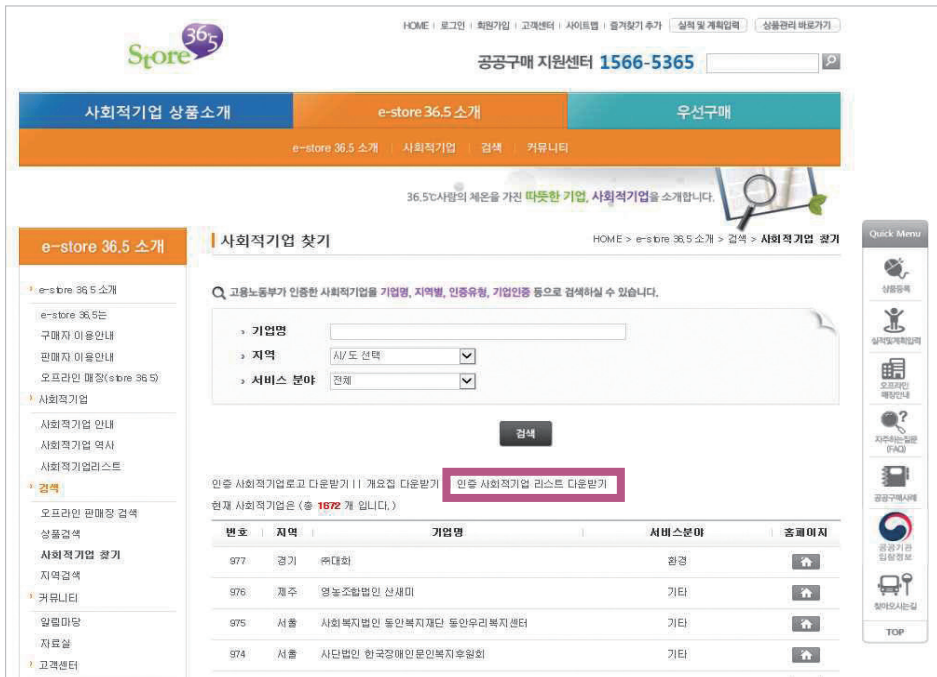


상품 찾기 : e-store36.5에서는 10개 대분류 또는 25개 중분류 카테고리 메뉴로 상품 및 상품정보(상품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지역검색, 인증유형) 검색이 가능하다.

-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인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과 상품의 정보를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 사회적기업은 자사의 상품 분류 및 상품 정보 제공이 적절하고 최신 자료인지 확인하여 반영을 요청해야 한다.
- 다수공급자계약과 같이 사전 공공조달 계약을 통해 신인도 검증 등이 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의 제품과 용역 구매 의사결정 시 공공구매와 관련하여 자사의 제품 공급실적, 수상실적 등 신인도 제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회사 홈페이지 등에 시인성 있게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사회적기업 찾기 : e-store36.5소개의 검색메뉴에서 ‘기업명’, ‘지역별’, ‘인증 유형별’로 검색이 가능하다.

※ e-store36.5소개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리스트에서 전체 사회적기업리스트 확인 가능




2. 공공구매지원센터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 설치된 공공구매지원센터를 통하여 구매 상담 (☎ 1566-5365)

☞ 사회적기업이 공급하는 제품과 용역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공공기관에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공공구매지원센터”를 통해 구매 의사결정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 공공기관들의 구매사례(수요 발생 유형)별로 주로 구입하는 품목과 자사의 공급 품목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기업 소재지 또는 공급을 원하는 지역의 수요 기관의 연간 수요 유발 행사계획 등을 확보하여 선제적으로 공급기회를 탐색하는 방안도 효과적이다.

구분	구매사례	품목
격려품, 기념품	체육대회, 간담회, 워크숍 등 각종 행사, 명절 등 기념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누, 치약, 칫솔, 화장품, 세제, 숯 • 건강식품, 꿀, 차, 커피, 제과세트(쿠키, 빵, 떡, 초콜릿) •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세트 • 명함지갑, 카드지갑, 다이어리, 핸드폰케이스 • 양말, 넥타이, 손수건, 티셔츠, 앞치마, 가방, 파우치, 모자 • 공연표(오케스트라, 뮤지컬, 연극, k-pop, 국악, 타악연주), 공정여행 티켓 • 자전거
공연	각종 행사 시 공연	• 오케스트라, 뮤지컬, k-pop, 국악, 타악연주
도시락	체육대회 및 행사, 직원 식사	• 출장뷔페, 도시락
식자재류	구내식당 식자재 공급	• 축산물, 유기농 농산물, 두부, 김치, 된장, 고추장, 청국장, 참기름, 들기름, 수제햄, 조미료세트
사무실 소모용품	상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사지, 토너카드리지, 컴퓨터, 프린터, 모니터 • LED 조명, 커튼, 블라인드 • 결재판, 파일철, 봉투, 종이컵, 화장지, 박스, 장갑
사무실 기호식품	상시	• 건강음료, 차, 커피, 쿠키, 빵, 떡, 초콜릿, 잼
의류	회사 유니폼	• 유니폼
해외출장 및 연수	출장 및 연수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여행, 전통문화체험 • 영어, 중국어, 일본어 회화수업
청소/환경 용역	상시(건물 관리)	• 청소, 소독, 방역, 쓰레기 수거, 재활용 쓰레기 처리, 세차, 도배, 장판
인쇄/IT/디자인 용역	구조, 정관규약 등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리플렛, 명함, 어깨띠, 기념패 • 영상물, 웹디자인, 공간 디자인(건물외벽 등)
기관 행사 축하용	개소식 등 행사	• 꽃배달, 가구
보건/의료	직원 건강관리	• 예방접종, 건강검진

2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기업을 결정한 후 실제 구매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계약절차를 거쳐야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이 자체조달을 할 것인지, 조달청으로 조달요청을 통해 중앙조달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한다.
-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별로 의무적으로 조달청으로 조달요청해야하는 기준금액과 대상품목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사전 인지하여 e-store36.5 이외에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 공급을 위한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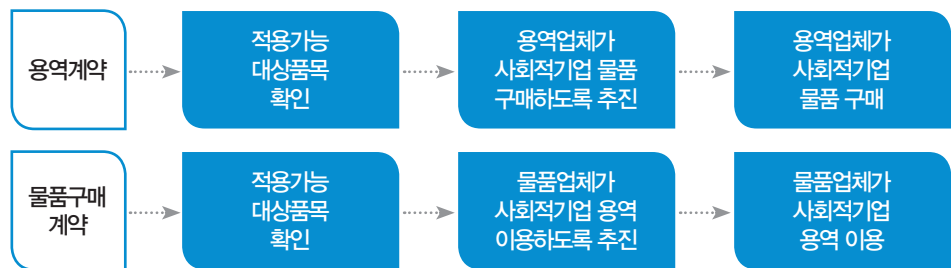
1) **직접구매**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를 결정한다.

2)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용역(또는 물품구매)을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또는 용역)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한다.

※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한다.(계약수행과 무관한 구매는 불인정)

※ 단,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기업간 물품(용역)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간접구매 절차〉



계약방법 :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을 활용한다.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계약제도를 활용한다.(법령상 사회적기업 단독 수의계약 조항은 없음)

입찰자격 및 평가기준 :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를 활용한다.
-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우선 검토하며 심사 시 반영한다.

3단계 :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사회적기업 온라인 상품 소개 사이트 “e-store 36.5” (www.e-store365.or.kr) 제품정보에 소개된 구매정보를 이용하여 구매한다.

오프라인 판매장 “스토어 36.5” (전국 65개소)에 문의하여 구매한다.
 ※ 자세한 매장 안내는 [붙임3]에서 확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수요빈도가 많은 상품을 조달청이 미리 계약하여 등록된 사이트) 내 사회적기업전용몰을 활용하여 구매한다.



3.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

주요사항

'17년 실적 9,428억 원, 총 구매액의 2.04%

'18년 계획 11,699억 원, 총 구매액의 2.61%

(단위: 백만원, %)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17년 실적	46,309,231	942,815	2.04
'18년 계획	44,810,672	1,169,937	2.61

※자료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18.04)

기관 유형별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

(단위: 백만원, %)

	'17년 실적			'18년 계획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총 구매액(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B)	비율(B/A)
국가기관	9,758,089	82,623	0.85	8,000,449	84,312	1.05
자치단체	5,591,323	337,443	6.04	5,744,124	358,715	6.24
교육청	6,347,918	101,802	1.60	5,926,461	138,081	2.28
공기업	12,857,856	208,184	1.62	13,633,808	384,921	2.82
준정부기관	3,736,947	107,314	2.87	3,511,522	91,850	2.62
기타공공기관	5,716,128	68,409	1.20	5,565,284	81,595	1.47
지방공기업	1,977,025	31,093	1.57	1,894,016	25,615	1.35
지방의료원	130,588	4,753	3.64	133,399	4,559	3.42
특별법인	193,357	1,194	0.62	401,609	289	0.07
합 계	46,309,231	942,815	2.04	44,810,672	1,169,937	2.61

※자료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고용노동부, 2018.04)

✓ 구매실적 자료의 활용

-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2017년을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실적 비중 43.8%(4,129억원)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 등의 비중 56.2%(5,299억원)로 구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사회적기업들이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재 지역 또는 근방의 지자체, 학교기관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공급기회 확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 ☞ 이러한 가능성은 곧 각 기관의 전년도 또는 당해년도 구매실적과 차년도 구매실적의 증가 수준과 절대비중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절대 구매금액과 증가율이 큰 공공기관(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급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지방공공기관의 기관평가 시 일반적으로 경상비용의 3%(중앙기관) 또는 전체 시설공사 금액을 제외한 물품과 용역 구매금액의 1%(지방자치단체) 이상이 될 경우 만점을 부여하므로 해당 기준 미만 금액의 공공기관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새로운 공급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 ☞ 사회적기업이 보유한 물품 및 용역을,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증대가 필요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구매 물품과 특성을 분석하여 준비한다면 새로운 공급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 일반적인 물품과 용역이 아닌 사회적기업이 고유하게 제공할 수 있는 물품과 용역 중에서 공공기관 등이 새롭게 수요로 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 이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4장

중소기업 공공 우선구매제도

-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 4.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 4.3 중소기업 규모별 경쟁제도
- 4.4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 4.5 직접생산확인제도
- 4.6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 4.7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4.8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 제도
- 4.9 공공구매론
- 4.10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
- 4.1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 4.1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 4.13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제4장 중소기업 공공 우선구매제도

- ☞ 공공계약 대상으로서 우선구매를 활용하는 대부분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 ☞ 따라서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 역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판로지원법에 따른 일반적인 공공구매제도를 모두 활용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과 관련한 우선구매 고려사항을 결합한 고유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4.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1. 개요

- ☞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 중 판로확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 지정 요건

- ① 국내에서 직접 생산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10개(국내 중소기업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경우 5개) 이상 있을 것
- ②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 실적이 10억원 이상일 것
- ③ ①과 ② 요건이 충족 시, 대기업 또는 수입 유통업체 등의 국내시장 진입으로 당해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판로가 축소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사례 또는 관련 통계 등도 조사하여 산업정책상 충분한 지정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3. 지정절차



지정기간

- 3년

지정현황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2017년 기준 204개 품명/789개 제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 3242, 3246)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사회적기업으로서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 제도가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도이다.
- 현재 모든 유형의 우선구매제도 지원대상 기업들이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특히 물품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사회적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물품과 용역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
- 2017년 12월 기준 총 789개 제품이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품목들을 포함하고 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여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품별로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 품목별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특히 직접생산확인증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물품과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기업과 단체에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필수 서류로 제품과 용역을 공급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최우선적으로 획득해야하는 필수 요건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2015.2.3.>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
-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4.2 공사용자재 직접(분리) 구매제도

1. 개요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 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자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 직접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이 대형건설사 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용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을 선별하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2. 주요내용

☞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 대상제품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제품 중에서 지정

☞ 대상공사 범위

- 20억원 이상 일반공사, 3억원 이상인 전문건설 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
- 공공기관은 적용대상 공사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경쟁제품으로 소요되는 자재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 분리구매 대상

지정기간

- 3년

지정현황

- 중소기업처기업부 공고 및 고시(2017년 기준 123개 품명/463개 제품)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2)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물품과 용역에 대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이 가능토록 해주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공공부문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물품 123개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 중 일반 물품과 용역이 아닌 시설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으로서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에 해당되는 경우 동일하게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충족하여야만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 대규모 공사에서 공사 부문과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을 분리하여 별도로 발주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물품구매 공고가 아닌 시설공사 관련 공고도 함께 검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공사로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을 분리하는 입찰에서 물품을 직접 공급하는 방법과 함께 시설공사 수주업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제품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구매기회 확대가 가능하다.

4.3 중소기업 규모별 경쟁제도

1. 도입배경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있어서 지나친 낙찰경쟁으로 인하여 영세기업의 수주기회 축소 또는 소수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하여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구분하여 규모별로 입찰참여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영세기업에 대해 판로지원을 강화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

2. 주요내용

제품지정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공급과잉 등으로 과다경쟁이 우려되는 제품으로 한정하여, 관련 조합의 신청에 따라 대상 제품을 선정한다.
- 지정대상 제외제품 관련 중소기업 수가 많지 않아 과잉경쟁 우려가 적거나, 기업 규모의 분포상 등급구분이 무의미한 제품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입찰의 참여 범위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단계로 구분하여 제품별로 중기업 및 소기업의 참여 최저 범위를 설정하고, 하위등급 기업은 상위등급 규모의 입찰참여를 허용하되, 상위등급 기업은 하위등급 규모의 입찰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

3. 중소기업의 규모별 경쟁 적용제품 및 규모별 입찰 참여제한 범위

조합명 업종 참여 제한범위

조합명	업종	참여 제한범위(단위:억원)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한국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연합회	간판, 전시대, 안내판(옥외용)	미제한	0.5미만	0.7미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사무용가구(금속제에 한함)	미제한	0.3미만	0.6미만
한국감시기공업협동조합	폐쇄회로텔레비전시스템	미제한	0.5미만	1.9미만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배전반	미제한	0.6미만	1.9미만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자동제어반, 계장제어장치	미제한	0.7미만	1.9미만
한국전시문화산업공업협동조합	실물, 모형	미제한	0.3미만	0.8미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가구, 실내장식가구	미제한	0.3미만	0.6미만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1~2)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을 직접생산확인증명을 받아 공급하면서 기업의 규모가 50인 미만의 소기업 규모 또는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규모인 경우 상기 “규모별 경쟁제품”의 입찰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참여가 가능한 입찰에 제한적으로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공급기회 확보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특히 종사자가 10인 미만의 사회적기업으로서 상기 규모별 경쟁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의 경우 품목별로 최저 3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 미만 입찰에 대해서는 소기업 및 중기업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상공인 간 경쟁을 통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 ② 제2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4.14>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③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4.4.14>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월평균 상시 근로자 수로 환산하여 산정한 인원
 - 가.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나.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가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다.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 ①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의 경우: 5명 미만
- ② 제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기준과 상시 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24.]

4.4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1. 도입배경

 판로지원법 제5조 및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게 일정비율 이상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토록 의무화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실질적 구매효과를 제고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제5조,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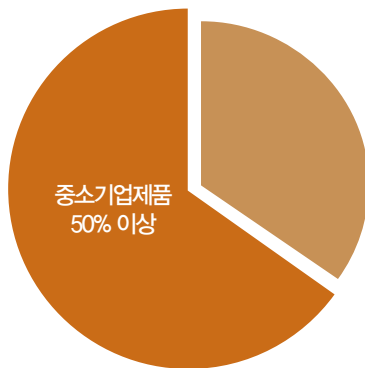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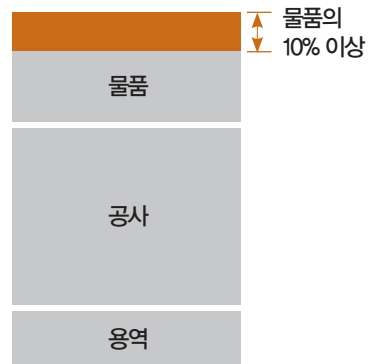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은 해당연도에 구매할 제품(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 총액대비 50% 이상,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은 중소기업 물품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및 계획을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자료 제출을 받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매년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실적에 관하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468)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4.5


직접생산확인제도

1. 목적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낙찰 후에 대기업제품, 수입제품의 납품 또는 하도급 생산납품 행위나 수의계약이 가능한 각종 법인단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의 명의를 빌려 수의계약 후 하청 생산한 제품 등의 납품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 주요내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공공구매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생산 능력보유 여부의 확인을 받아 공공구매 종합정보(smpp.go.kr)에 등록해야 한다.

확인방법

- 직접생산확인 은 품목에 따라 생산공장, 생산설비, 생산공정, 필수인력, 기타 관련 자료 등을 조사원이 생산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다.

확인대상

-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결과 낙찰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 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1천만원 이상의 소요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결정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자이다.

확인기관

- 당해 계약의 당사자인 공공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구매 종합정보를 통해 제공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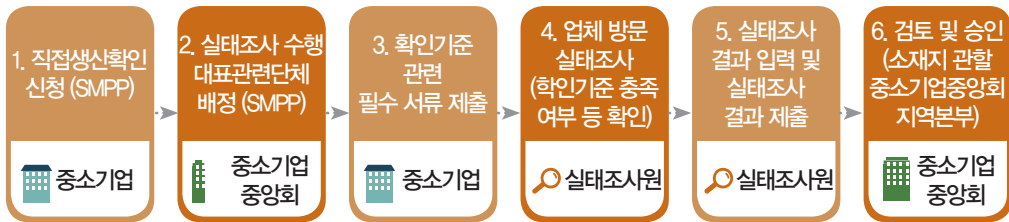
☞ 제재조치

-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확인이 취소되며 6개월 ~ 1년간 재신청이 불가하다.

☞ 처리기간

- 중앙회장은 14일 이내(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에 처리한다.(운영요령 제30조 제7항)

3. 확인절차



☞ 문의처


-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여성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단체 등 우선구매제도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물품과 용역, 특히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직접생산확인증명이다.
-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자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에 대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와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품명별 직접생산확인증명을 위한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5-41호)”을 참조해야 한다.
-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물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 등을 제조하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은 설립 이전 해당 제품의 생산을 위한 생산시설, 공정, 인력 등의 요건이 충족 가능한지를 사전 판단하고 추진하여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4.6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

1. 개요

 2006.1월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심사 제도이다.

- 중소기업자간 치열한 수주경쟁과 이에 따른 가격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되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 낙찰제를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보전(낙찰 하한율 88%)하기 위하여 도입하였다.
- 적절한 납품이행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선별, 품질관리 우수 및 정부정책 호응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대해 우대 적용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2. 주요내용

 계약이행능력심사 적용대상 입찰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를 위한 제한 경쟁, 지명경쟁 입찰에 적용한다.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입찰참가 자격

- 입찰 품목을 직접생산할 수 있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한다.

 낙찰자 결정 방법

- 최저가로 응찰한 순위에 따라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 최저가 낙찰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의 88% 이상을 보장

심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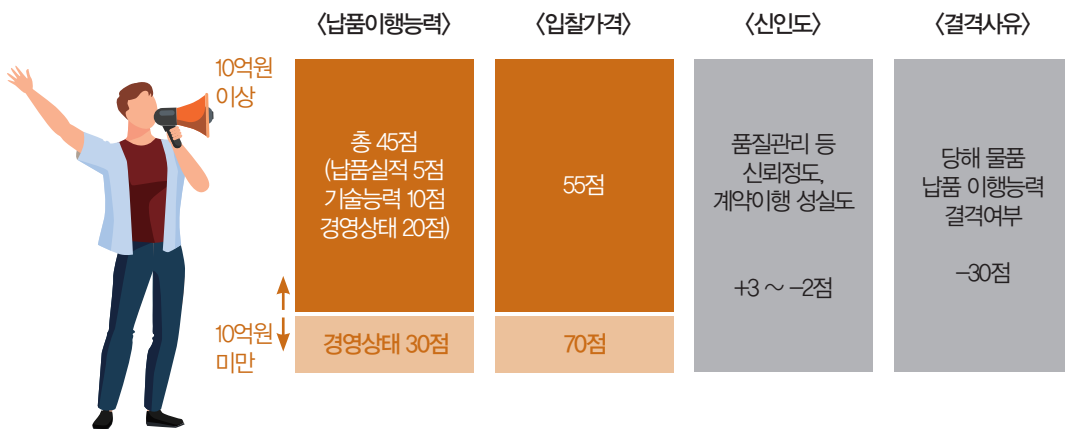
-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및 결격사유를 평가

10억원 미만의 경우	가격 70점, 납품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만을 평가) 30점 비율로 평가
10억원 이상의 경우	가격 55점, 납품이행능력 45점(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 신용평가등급 30점)으로 평가
공통 사항	신인도 3 ~ -2점과 결격사유는 공통 적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1항
-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점수를 30점으로 평가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 (☎ 02-2124-3241~2)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 공공조달 시장에서 일반적인 물품의 공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낙찰자를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적격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 적격심사제도는 물품을 공급하려는 업체의 제조능력과 가격을 평가하여 적정 제조 능력을 보유한 업체들이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가격만을 낙찰자 선정의 기준으로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도에 비해 제조역량, 품질을 우선 평가하는 제도이다.
- 그러나 적격심사를 통한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낙찰하한율이 80% 초중반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공급하더라도 충분한 공급의 효과를 얻기가 어려울 수 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제도는 이러한 일반적 적격심사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한 입찰에서 낙찰자를 선정하는 평가방법으로 낙찰하한율이 88%이상 보장될 수 있도록 한 평가방법이다.
- 따라서 사회적기업들이 중소기업자간 경쟁 대상물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 등을 공급하기 위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뿐만 아닌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에 있는 납품이행능력과 관련된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등 신인도 가점 평가항목 등의 세부 평가기준을 확인하여 통과기준 점수 확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1. 개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 신제품(NEP), 신기술제품(NET), SW품질인증제품(GS), 우수조달제품, 성능인증제품(EPC), 구매조건부사업 성공제품, 민·관공동투자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녹색인증제품, 수조달 공동상표, 중소기업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제품,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 성공제품,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 공동연구개발 선정품 13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주요내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은 「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판로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우선구매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60일 이내에 우선구매 조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법정 의무 구매비율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이다.

3.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연락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24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55
부산·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24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41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28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70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1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8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부	031-201-6936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부	055-268-2543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부	032-450-1134		

4. 기술개발제품 인증기관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기술인증명	기관명	연락처
NEP, NET (과학기술), GS	국가기술표준원	02-509-7286	우수조달	조달청	042-481-7285
NET(건설)	국토해양부	02-2110-6299	NET(환경)	환경부	02-2110-6727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상기 NET(신기술인증), NEP(신제품인증), 성능인증제품 등의 인증을 받아 공급이 가능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거나 향후 잠재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는 사회적기업 우선구매제도와 함께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다.
- 2015년도부터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 모두에서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법정 의무구매 목표비율(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의 10% 이상)이 설정되어 추가적인 공급기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 특히 수요기관과 함께 구매조건부기술개발제품을 개발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에 통해 해당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기업이 보유한 뛰어난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과 협약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여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제품의 경우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별도의 개발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1. 개요

 성능 신뢰도에 확신이 없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정부가 성능검사를 하여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 및 공공구매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성능인증을 받아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의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주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8조

2. 주요인증 내용

성능인증

- 대상품목 : 공공기관에 납품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
- 성능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1회에 한 해 3년간 연장 가능)

성능보험

- 성능인증제품 구매로 인한 구매담당자의 피해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개발제품 사용기피 현상을 방지한다.
-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에게 면책을 부여한다.

3. 성능인증 절차



4. 지방청 성능인증 담당자 연락처

소속	연락처	소속	연락처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2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3
부산·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4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43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43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75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44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55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부	031-201-6935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부	055-268-2573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부	032-450-1141		

5. 성능보험 사업자

서울보증보험, 기계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삼성화재, LG화재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사회적기업으로서 상기 기술개발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수요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은 품질 불확실성, 사후지원(A/S) 곤란 등의 문제로 감사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구매의사 결정을 주저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해당제품의 성능을 평가하여 성능인증을 부여하고 성능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성능보험제도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시점 이후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구매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으나 납품실적, 품질 등의 측면에서 평판 및 신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사회적기업에서는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가 구매 의사결정에 부담을 해소하여 공급 기회 확대가 가능하다.
 - 일반제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는 “파란우산공제”, “PL단체보험” 등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이 공공 및 민간에서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 공급 제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 배상을 보장하는 공제제도의 활용이 가능하다.
-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이 아닌 일반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의 계약담당자(구매자)가 구매와 관련하여 염려하는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해소 또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 가능하다.

4.9 공공구매론

1. 개요

 공공기관 낙찰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대출제도이다.

-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과 계약한 사실을 근거로 은행에서 생산/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금융서비스이다.
- 생산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납품 계약건에 대하여 공공기관에 적기에 제품을 납품토록 하고, 공공기관은 안정적으로 자재수급을 도모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2. 주요내용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하다.

예외) 기업은행

- 선금수령액이 없는 경우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의 80% 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지 신청 가능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타 금융 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대출에 비하여 저렴하다.
- 신청부터 대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고객에게 이용의 편리성을 제공한다.(www.smpp.go.kr)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 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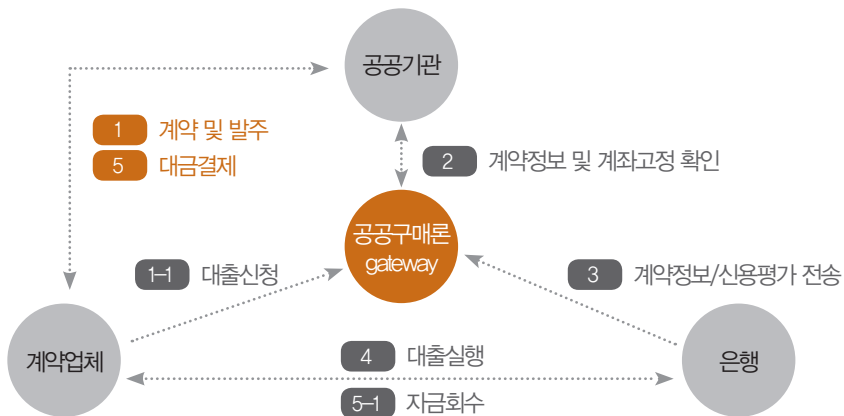
📄 신청 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3. 공공구매론 지원 흐름도

📄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37~9) 또는 1666-9988(내선:3)
중소벤처기업부 공공판로지원과(053-659-2237)



-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사회적기업이 공공조달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어 제품을 공급할 기회를 확보하더라도 생산을 위해 필요한 관련 원부자재 확보 등을 위한 자금이 충분치 않을 경우 공공구매론을 활용하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 공공구매론은 낙찰자로 선정되어 체결한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사전 약정을 맺은 시중 은행으로부터 저리로 생산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실질적으로 다른 대출과 달리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사회적기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등 재무적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에게 납품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자금을 지원해주는 효과적인 제도로 볼 수 있다.

4.10 다수공급자 물품계약(MAS) 제도

1. 개요

 각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규격화된 물품에 대한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조달청이 2인 이상의 공급자와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하는 제도이다.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물품계약)

2. 주요내용

계약방법 및 종류

- 일반경쟁입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대상물품

- 시중에서 거래되는 규격이 확정된 물품으로 공공기관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과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제품

☞ 계약대상자 선정

- 적격성심사를 거쳐 품질, 성능 등이 유사한 제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다수 적격자와 계약

3. 다수공급자물품계약 흐름도



✓ 다수공급자물품계약의 주요특징

1. 계약방법 및 종류

☞ 일반경쟁계약

- 계약 이전의 사전적인 경쟁보다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수의 적격자(적격성평가 결과 적격자로 통보 받은 자)와 계약함으로써 계약 이후의 경쟁성이 제고된다.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조달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구매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계약제도이다.

2. 대상물품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공공기관의 수요가 있거나 수요가 예상되는 물품을 가리킨다.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3. 계약상대자 선정

 경영상태(70점) 및 납품실적(30점)을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

- 경영상태 + 납품실적 = 85점 이상인 자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며, 가격협상 결과 협상 기준가격 이내 가격을 제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협상 기준가격 이내로 가격을 제안한 규격(모델)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4.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체결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가격협상이 성립된 모든 적격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5. 계약단가 인하

 계약기간 동안 최저가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가격인하가 가능하다.

6. 다량납품 요구 시 할인을 적용


 입찰자는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할인을 제시할 수 있다.

7.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및 품목의 추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규격(모델)의 제품보다 성능이 향상된 제품으로 대체 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한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하여 가격 자료와 규격서를 제출 받아 가격협상 과정을 거쳐 품목 추가를 할 수 있다.

8.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1~3년까지 가능하며,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품목은 1년 이내의 계약기간으로 산정한다.

 문의처

- 조달청 쇼핑물기획과 (☎ 070-4056-7273)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업무처리절차




- 공공조달을 통해 물품 등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이 소요로 하는 물품 중 다수의 수요기관이 공통적, 반복적으로 구매하면서 시중에서 상용화 또는 규격화되어 품질 및 가격이 검증된 제품에 대해서는 사전 조달청에서 생산 업체와 제품을 미리 심사하여 온라인 쇼핑몰과 유사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하여 구매토록 하고 있다.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 등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대부분의 대상물품이 등록되어 있다.
- 원칙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서만 구매가 가능하므로 사회적기업이 초기 제품을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공급 여부와 상관없이 인지도 제고 등을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적기업이 물품을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분 실제 구매 및 공급 과정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신규로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사회적기업들은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중 사회적기업들이 주로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을 사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shopping.g2b.go.kr → “전용몰(메인화면 우측 하단)” → 전용몰 카테고리 “사회적가치실현기업(메뉴 중 좌측 하단)”

4.11 소액수의계약 대상업체 추천제도

1. 개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구매촉진법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조합으로부터 구매조건에 맞는 대상업체(소기업, 소상공인)를 추천받아 이들 업체간의 가격 등을 비교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제고하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 주요내용

추천방법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업체의 '추천신청',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등 일련의 추천업무를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내에 설치된 '소액수의계약 추천시스템'을 통해 처리한다.

업무처리 절차

- 공공기관의 '대상업체 추천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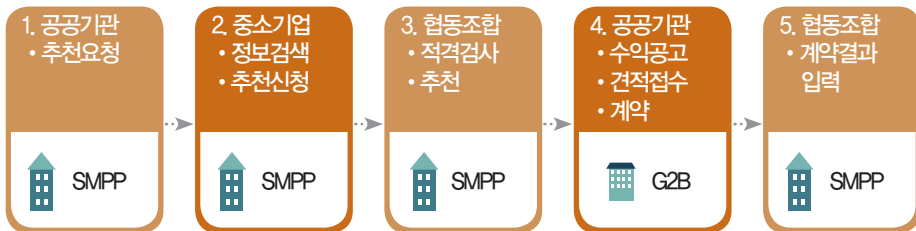
- 제품선택 : 세부품명(G2B번호)별로 구매 제품 선택(복수가능)
- 조합선택 : 선택한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중에서 선택
- 추천요청 업체수 : 5개 업체 이상(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2개 이상)

- 업체의 '추천신청'

- 대상업체 : 해당 세부품명(G2B번호)에 대해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협동조합의 '대상업체 추천'

- 대상조합 :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 중 공공기관이 선택한 해당 세부품명(G2B번호) 관련 협동조합
- 업체추천 : 추천신청순서에 따라 세부품명별(G2B번호별) 연간 추천 횟수와 업체별 연관계약한도 등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추천(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비조합원 1개 포함)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 (☎ 02-2124-3242)
공공구매정보센터 (☎ 1666-9988)


4.12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1. 개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공공기관에서 일정금액 미만 조달구매 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일정규모(기재부 고시금액 : 2.1억원) 미만 물품·용역(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제외) 구매 시 중소기업간 제한경쟁을 진행한다.

- 1억원 미만 : 소기업간 제한경쟁
- 1억원 이상 ~ 2.1억원 미만 : 중소기업간 제한경쟁

 3인 이상 제조 소기업·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 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경우 해당 업체 간 제한경쟁입찰, 또는 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업체 간 지명경쟁입찰이 가능하다.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협업사업
- 공동상표 도입 또는 활용을 위해 중기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 조합원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사업(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제공 사업

※ 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물품과 용역 중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국제입찰 대상 미만 금액, 즉 고시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입찰에서는 중소기업자들만 우선 경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사회적기업도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1억원 미만 물품 및 용역 입찰에서는 중소기업 중 중기업을 제외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 해당 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물품이 아닌 모든 유형의 물품과 용역 공급에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4.13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경쟁제품)

1. 개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영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지정하여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제도이다.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용역 구매 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이 가능하다. 또는 협동조합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한 3인 이상의 제조 소기업과 제한경쟁이 가능하다.

- 협동조합에 업체 추천 요청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해당업체와 지명경쟁이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물품·용역 선정기준

- 경쟁제품 중 전년도 소기업 수주비율이 20% 미만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중 소기업 구성비율이 30% 이상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이 2개 이하인 제품은 제외

사회적기업의 활용방안

-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의 경우 물품보다는 용역 부문, 특히 사회복지, 지역연계형 관광, 문화상품, 방과후 교육 등에 특화 및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 기존 물품의 경우는 타 우선구매제도 대상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단체 등이 상대적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선발 참여자로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상기 사회복지, 지역연계형 관광/문화상품, 방과후 교육 등과 같은 지역밀착형 용역(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의 추가가치와 높은 적합도를 보유하면서 사회적기업들이 경쟁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 따라서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사회적기업들이 경쟁우위를 가지고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소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서비스 공급기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적기업이 활용 가능한 공공구매제도

- 5.1 조달청 사회적기업 가점제도
- 5.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제도
- 5.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소액수의계약제도
- 5.4 단체표준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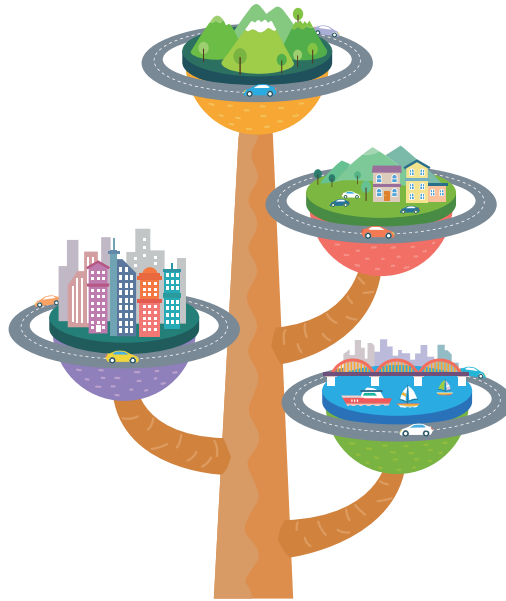
5.1

조달청 사회적기업 가점 제도

5.1.1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가 적용되는 입찰에서 사회적기업은 신인도 평가 부문에서 최대 2점의 가점을 적용 받는다.(2018년 4월 이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정책지원 부문) 평가(조달청 지침 제894호, 2018. 3. 30.)

자.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2.0
		C.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0.5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F.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2
		G.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H.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할하는 알뜰주유소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	
		- 5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1.0
		- 3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0.8
		- 10건 이상 협약체결 기업	0.5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1.0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0
		K.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L. '삭제'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전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1.0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5.1.2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입찰 시 낙찰자선정 평가기준인 계약이행 능력심사에서도 일반제품에 적용되는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2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모두 적용된다.


자. 정책지원	부처별 정책지원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은 업체	1.0
		B.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2.0
		C.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2.0
		D.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0.5
		E.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F. 산업통상부장관이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인증기업'	0.2
		G.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1.0
		H.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정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0.5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1.0
		J.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1.0
		K.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5
		L. '삭제'	
		M.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전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 포함)	1.0

5.1.3 일반응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대표적 용역 중의 하나인 청소, 경비 등과 같은 일반응역 입찰 시 조달청 일반응역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는 물품구매와 동일하게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2018년 4월부터 기존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이외 추가로 자활기업, 마을기업에도 2점을 부여한다.

5.1.4 조달청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일반용역과 달리 건축설계, 시공감리, 엔지니어링(플랜트 등) 용역과 같은 기술용역 입찰에서 낙찰자 결정 기준인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 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에 대해 0.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2018년 4월 이후 신규로 적용한다.

심사항목	세부항목	배점
가. 유사실적	A. 당해 용역과 동일한 공종의 최근 3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용역 예비 가격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2.0
나. 여성기업	A.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3년 이상 · 3년 미만	0.5 (0.5) (0.25)
다. 임금체불	A.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라.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A.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2.0
마. 정책지원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업체	0.4
	B.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4
	C.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생활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D.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0.2
	E.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0.2
	F.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0.2
	G.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자활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H.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마을기업’으로 지정된 업체	0.2

5.1.5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가점 부여

☞ 사회적기업을 포함하여 공공조달 물품 조달업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계약방법인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에서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경쟁을 시행하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평가배점의 1배 이내에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고시 제2017-27호, 2017.12.26., 일부개정)의 종합평가방식에서 정책지원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은 수요기관이 정책지원 평가항목에 부여한 배점의 한도만큼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종합평가방식에서 수요기관이 선택하는 선택평가항목 중 “정책지원” 평가 항목은 최대 5점까지 배점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적기업 등은 최대 5점의 평가점수를 부여받을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평가기준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기본 평가항목 (60점 이상)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45점 이상 75점 이하
	적기납품	납기지체 여부	10점 이상 20점 이하
	품질관리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	5점
	신인도 (-1.75~+1.5)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점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선택 평가항목 (40점 이하)	선호도	자체 선호도 조사	5점 이하
	지역업체	지역업체 여부	5점 이하
	납품기일	납품기한 단축가능성	5점 이하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결과	10점 이하
	납품실적	해당 제품 납품실적	5점 이하
	경영상태	업체 신용평가등급	5점 이하
	정책지원	정책지원 대상 기업 여부	5점 이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정책지원”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정책지원	중증장애인생산제품,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1
	창업기업, G-PASS기업	1가지 이상 해당 : 배점 × 0.7
	여성기업	배점 × 0.6
	해당없음	배점 × 0.4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 수요기관이 종합평가방식이 아닌 다수의 수요기관의 평가기준 적용사례를 참조하여 조달청이 평가중점별 표준화한 표준평가방식 중 유형 3의 경우는 기본평가항목으로 “정책지원” 평가항목에 대해 5점을 배점하고 있다.

- “표준평가방식 3”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평가방식에서 “정책지원” 항목과 상관 없이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5점을 기본 평점으로 받을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표준평가방식 유형3(Ⅲ)

☞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6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15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5
	정책지원	정책지원 대상 기업 여부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 1회 납품요구대상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구 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표준평가 (Ⅲ)	가격	제안가격의 적정성	55
	적기납품	납기지체여부	20
	사후관리	계약이행실적평가	10
	품질관리	조달청 및 전문기관검사, 품질점검 결과	10
	정책지원	정책지원 대상 기업 여부	5
	신인도	불공정행위 이력 평가 결과	-0.25
		최저임금 위반	-0.5점
		임금체불	-0.5점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0.5점
		고용우수기업	+0.5점
	기술 인증	+1점	

5.2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점제도

5.2.1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행 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은 1점의 신인도 가점을 부여 받는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 2017.12.13., 일부개정)

5)기타	여성기업 등	1.0	A. 여성기업	0.5
			B. 여성고용 우수기업	0.5
			C.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1.0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E.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20% 이상	0.5			
- 10% 이상 20% 미만	0.3			
	G.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0.5		
	H. 하도급거래 모범업체(하도급 공정거래 우수기업)	0.5		

5.2.2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준 중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광역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별도 제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별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분야에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해 최소 0.5점 ~ 최대 1.7점까지 가점을 적용하고 있다.

경상남도	평점
타.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1 0.5
서울시	평점
D. 사회적기업(예비 포함)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 지정) •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 마을기업(행정자치부 지정) 	1.5 0.8 1.5 1.5 1.5
전라북도	평점
A. 중·소기업, 소상공인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1.0
A. 여성기업 B. 여성고용 우수기업	1.0 0.5
C. 장애인 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D.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0 0.5
충청북도	평점
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0.5
광주시	평점
다.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0.5 0.5

경상북도		평점
마.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1.0 0.5
전라남도		평점
다.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 각 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0.5 0.5
충청남도		평점
J.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1.7
인천광역시		평점
다. 사회적기업(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육성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사회적기업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1.0 +0.5
대구시		평점
아. 사회적기업 (1)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2)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		1.0 0.5



5.3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소액수의계약제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중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에 의한 견적을 통해서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그러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확대되어 여성기업의 수의계약을 통한 우선구매실적이 크게 확대되었다.

☞ 이러한 효과를 고려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 및 일자리 창출과제”를 반영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금액을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를 추진하였고 현재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30조제1항제2호)이 입법예고 된 상황이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 예상)

☞ 다만,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기업* 등에 한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확대된다.(2천만원 ⇒ 5천만원)

* 1인 견적 5천만원까지만 장애인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30% 이상

☞ 2018년 상반기 중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및 산하 교육기관 및 지방공기업 입찰 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소액수의계약) 금액 상한선이 기존 2천만에서 5천만으로 상향 적용되어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게 된다.

5.4.1 단체표준의 정의(산업표준화법 제27조)

☞ 서비스 산업의 표준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여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2006년부터 KS서비스(S) 법령 및 표준정비를 통해 2008년부터 서비스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산업표준화법 제1조, 제6조)

☞ 단체표준이란 한국산업표준(KS)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할 수 있고 제품의 품질고도화, 생산효율 향상, 기술혁신을 기하여, 단순 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기술에 관한 기준이다.

- (1)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 (2)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 (3)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

☞ KS보유 서비스 표준은 콜센터, 시설관리, 건축물 클리닝, 장례식장, 골프장, 휴양 콘도미니엄, 차량수리 및 견인, 혼인예식장,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 9개 품목에 대해 65개 업체, 101개 사업장에서 인증을 획득했다.(2018.03 기준)

- 한국산업표준('18.03기준 20,277종)중 133종(0.66%)의 서비스 KS가 제정되어 양적으로는 해외 주요국 수준이나, 소비자 서비스가 대부분이다.

5.4.2 단체표준 목적 및 요건

- (1) 동일 업종의 생산자들이 생산성 향상, 원가절감, 호환성 확대, 공동이익 추구
- (2) 제품 품질향상, 거래의 공정화 및 단순화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호
- (3) 한국산업표준(KS)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의 보완
- (4) KS와 사내표준의 교량 역할
- (5) 급속한 기술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신속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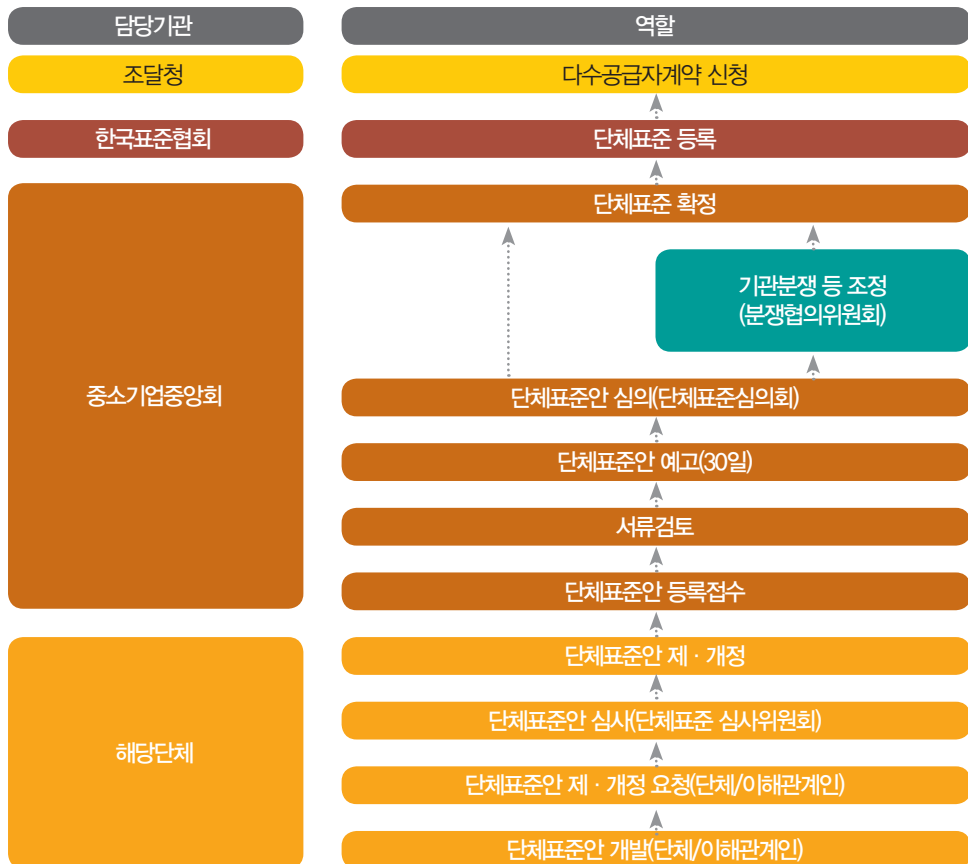
☞ 단체표준 제정 단체의 요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단체 등록 시 요건 확인)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같은 업종의 협동조합이 지역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연합회로 함)
- (2) 소비자보호, 공산품의 품질향상 또는 산업활동과 관련된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단체표준의 요건(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전문위원회를 통해 요건 확인)

- (1) 해당 단체표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제정된 것일 것
- (2) 관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KS) 또는 다른 단체표준과 중복되지 아닐 것


5.4.3 단체표준 및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절차



5.4.4 KS 및 단체표준 서비스 인증 혜택 및 지원

 KS 및 단체표준 인증 획득을 통해 인증 획득 기업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 입증과 물품 등의 구매 시 구매규격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효과	내용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및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 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인증제품(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투명화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를 생산·보급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

 특히,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서비스 조달 입찰 시 우선적인 구매 혜택, 검사형식 승인 등의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효과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인증제품 우선 구매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입찰 계약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참여(세부 내용 4.12절 참조)

붙임1_공공기관별 '17년 구매실적 및 '18년 구매계획

(단위: 천원, %)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 국가기관(53개) ◇							
1	고용노동부	214,437,486	13,342,681	6.22	251,285,365	17,589,976	7.00
2	방위사업청	2,929,945	142,994	4.88	2,772,610	168,000	6.06
3	여성가족부	12,080,430	484,756	4.01	9,600,000	166,000	1.73
4	보건복지부	162,714,251	6,037,478	3.71	159,575,000	797,875	0.50
5	법제처	11,919,002	354,180	2.97	12,295,836	368,856	3.00
6	원자력안전위원회	1,589,375	46,529	2.93	1,615,000	21,100	1.31
7	공정거래위원회	10,966,707	300,434	2.74	10,944,000	186,308	1.70
8	국세청	137,583,514	2,798,532	2.03	136,736,000	2,793,782	2.04
9	금융위원회	7,459,393	148,947	2.00	7,350,000	161,700	2.20
10	인사혁신처	26,388,028	485,574	1.84	27,229,000	276,300	1.01
11	문화재청	69,928,865	1,287,654	1.84	90,836,759	911,841	1.00
12	감사원	13,289,129	226,214	1.70	5,535,000	36,000	0.65
13	국가인권위원회	5,371,171	90,566	1.69	4,856,360	48,398	1.00
14	조달청	23,877,094	403,963	1.69	23,852,200	465,342	1.95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4,943,160	1,065,367	1.64	61,788,543	826,935	1.34
16	방송통신위원회	2,223,709	35,576	1.60	2,100,000	10,400	0.50
17	산업통상자원부	89,081,624	1,413,989	1.59	101,343,600	1,416,000	1.40
18	중소벤처기업부	24,047,534	349,787	1.45	21,715,597	220,000	1.01
19	교육부	56,391,890	798,761	1.42	56,391,890	798,761	1.42
20	농림축산식품부	116,222,465	1,571,512	1.35	116,460,000	1,572,000	1.35
21	국민권익위원회	17,158,498	211,539	1.23	20,271,570	204,000	1.01
22	경찰청	615,571,023	7,099,363	1.15	615,585,000	18,455,400	3.00
23	산림청	268,600,594	3,002,653	1.12	218,468,830	3,059,066	1.40
24	대법원	213,573,213	2,346,902	1.10	203,611,273	2,645,976	1.30
25	국회	73,724,863	751,798	1.02	75,420,535	762,419	1.01
26	문화체육관광부	405,658,295	3,984,812	0.98	299,864,000	3,933,500	1.31
27	국가보훈처	50,397,829	473,122	0.94	49,000,000	1,470,000	3.00
28	기획재정부	58,641,673	546,400	0.93	58,647,044	318,475	0.54
29	병무청	31,393,025	269,328	0.86	21,832,935	142,148	0.65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30	해양수산부	113,535,348	966,586	0.85	113,535,348	1,255,000	1.11
31	식품의약품안전처	131,836,444	1,083,582	0.82	123,852,000	1,232,327	1.00
32	기상청	75,922,489	592,590	0.78	70,148,000	491,036	0.70
33	대통령비서실	16,248,649	125,412	0.77	18,000,000	180,000	1.00
34	법무부	205,532,099	1,507,451	0.73	190,000,000	1,064,000	0.56
35	소방청	45,328,152	321,776	0.71	40,001,000	310,000	0.77
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36,144,088	3,028,759	0.69	360,000,000	3,600,000	1.00
37	국방부	1,996,626,525	13,141,938	0.66	1,110,032,056	5,705,000	0.51
38	통계청	48,925,341	310,681	0.64	50,555,558	322,565	0.64
39	환경부	483,630,766	2,695,443	0.56	435,978,000	2,987,000	0.69
40	관세청	59,615,439	332,499	0.56	58,175,439	332,499	0.57
41	외교부	171,372,282	885,721	0.52	66,300,000	1,149,770	1.73
42	통일부	45,835,136	187,310	0.41	33,800,000	229,450	0.68
43	헌법재판소	5,153,260	19,236	0.37	4,550,000	19,600	0.43
44	특허청	135,515,615	442,338	0.33	162,706,068	406,765	0.25
45	국무조정실	13,199,519	37,655	0.29	12,900,000	70,000	0.54
46	행정안전부	1,066,497,213	3,016,477	0.28	634,829,784	1,288,050	0.20
47	새만금개발청	16,097,574	45,145	0.28	17,735,000	0	0.00
48	농촌진흥청	78,388,362	208,466	0.27	29,050,000	101,675	0.35
49	국토교통부	1,358,893,276	2,808,521	0.21	1,358,893,276	3,091,347	0.23
50	해양경찰청	347,577,772	686,076	0.20	323,400,000	575,300	0.18
5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8,492,173	107,584	0.18	63,023,800	26,000	0.04
52	대검찰청	57,577,263	0	0.00	54,000,000	48,000	0.09
5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980,000	0	0.00	2,000,000	0	0.00
◇ 자치단체-광역(17개) ◇							
1	제주특별자치도	118,476,466	10,493,837	8.86	118,476,466	10,500,000	8.86
2	서울특별시	315,393,733	21,157,872	6.71	328,009,482	22,638,922	6.90
3	세종특별자치시	50,335,690	3,282,533	6.52	50,335,690	3,348,184	6.65
4	충청남도	77,382,732	2,658,238	3.44	63,436,000	2,658,000	4.19
5	대전광역시	45,367,354	1,466,574	3.23	90,000,000	4,959,836	5.51
6	부산광역시	59,630,152	1,764,565	2.96	61,404,000	1,755,000	2.86
7	인천광역시	61,269,391	1,797,816	2.93	82,930,000	1,818,500	2.19
8	경상남도	70,046,343	1,646,600	2.35	70,046,350	2,099,415	3.00
9	경상북도	82,836,931	1,794,688	2.17	53,500,000	1,586,000	2.96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0	울산광역시	53,719,959	874,577	1.63	53,436,239	874,577	1.64
11	광주광역시	45,289,668	707,203	1.56	45,295,286	715,305	1.58
12	경기도	140,563,256	1,857,471	1.32	267,554,479	3,869,500	1.45
13	전라북도	60,912,294	779,886	1.28	60,865,000	1,600,000	2.63
14	대구광역시	60,803,243	740,741	1.22	75,853,638	839,824	1.11
15	충청북도	52,264,155	598,415	1.14	52,264,155	607,118	1.16
16	전라남도	72,037,007	677,119	0.94	76,814,529	2,073,992	2.70
17	강원도	143,058,410	1,182,704	0.83	108,000,000	2,302,150	2.13
◇ 자치단체-기초(226개) ◇							
1	경기도 성남시	78,303,299	50,592,211	64.61	79,208,800	51,458,000	64.97
2	광주광역시 서구	9,022,619	2,431,472	26.95	6,400,507	3,255,257	50.86
3	경기도 화성시	41,850,400	10,231,198	24.45	41,850,400	23,495,916	56.14
4	전라남도 목포시	11,575,157	2,434,386	21.03	11,614,581	2,427,588	20.90
5	전라북도 익산시	22,994,150	4,634,275	20.15	17,385,922	4,475,221	25.74
6	경기도 수원시	65,696,064	13,233,127	20.14	54,750,000	6,621,000	12.09
7	인천광역시 동구	6,356,571	1,197,053	18.83	4,211,100	524,000	12.44
8	경상북도 안동시	28,719,000	5,296,624	18.44	27,416,000	5,383,667	19.64
9	전라북도 전주시	25,723,576	4,737,253	18.42	25,723,576	4,737,253	18.42
10	인천광역시 남구	6,819,449	1,241,230	18.20	7,068,000	708,000	10.02
11	경기도 시흥시	52,819,485	9,195,826	17.41	50,100,000	2,430,000	4.85
12	부산광역시 북구	4,477,929	748,685	16.72	3,935,600	231,967	5.89
13	광주광역시 광산구	10,468,091	1,744,016	16.66	10,468,162	588,794	5.62
14	경기도 남양주시	26,062,705	4,332,692	16.62	24,640,000	1,025,224	4.16
15	경기도 포천시	17,412,858	2,748,579	15.78	14,850,000	2,436,000	16.40
16	경기도 구리시	10,880,952	1,659,823	15.25	9,632,000	402,450	4.18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12,737,707	1,885,531	14.80	7,149,216	341,294	4.77
18	인천광역시 남동구	16,601,944	2,391,366	14.40	17,500,000	1,560,000	8.91
19	대전광역시 대덕구	8,195,911	1,151,110	14.04	5,196,552	579,246	11.15
20	서울특별시 금천구	17,695,002	2,473,461	13.98	15,840,000	2,532,000	15.98
21	충청남도 서천군	10,934,784	1,482,920	13.56	9,564,000	706,000	7.38
22	서울특별시 노원구	13,134,141	1,649,345	12.56	13,134,240	1,685,560	12.83
23	부산광역시 강서구	5,141,871	624,213	12.14	5,287,000	643,000	12.16
24	인천광역시 계양구	5,925,841	713,497	12.04	5,942,863	723,775	12.18
2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3,734,000	448,000	12.00	2,598,000	360,000	13.86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26	부산광역시 사상구	3,770,444	426,476	11.31	3,378,000	415,000	12.29
27	서울특별시 성북구	14,417,792	1,616,356	11.21	14,538,200	1,670,100	11.49
28	강원도 영월군	17,251,369	1,930,832	11.19	18,000,000	840,000	4.67
29	경상남도 하동군	8,306,222	915,458	11.02	7,890,911	792,735	10.05
30	광주광역시 남구	10,516,822	1,152,861	10.96	10,514,702	1,152,583	10.96
3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15,852,342	1,704,893	10.75	16,170,000	1,700,000	10.51
32	서울특별시 용산구	9,356,348	980,249	10.48	8,400,000	1,000,000	11.90
33	충청남도 아산시	35,093,010	3,628,617	10.34	37,785,856	3,961,296	10.48
34	경기도 안성시	21,489,138	2,159,177	10.05	22,780,000	2,334,000	10.25
35	서울특별시 양천구	9,495,974	944,323	9.94	9,495,974	207,566	2.19
36	서울특별시 도봉구	12,170,046	1,197,503	9.84	11,598,348	1,680,000	14.48
37	경기도 파주시	32,455,991	3,175,487	9.78	31,473,443	3,171,199	10.08
38	충청남도 천안시	59,345,264	5,793,183	9.76	5,900,000	885,000	15.00
39	광주광역시 북구	6,955,784	675,591	9.71	8,160,779	417,174	5.11
4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0,874,419	1,051,635	9.67	11,418,140	1,051,635	9.21
41	전라북도 남원시	10,877,565	1,046,315	9.62	5,517,994	547,393	9.92
42	경기도 광주시	33,400,255	3,206,385	9.60	30,468,827	3,367,310	11.05
43	경기도 오산시	22,384,606	2,069,973	9.25	20,955,000	1,950,009	9.31
44	전라북도 무주군	10,814,729	997,574	9.22	10,739,500	614,120	5.72
45	충청남도 홍성군	20,146,418	1,823,696	9.05	19,733,636	1,674,203	8.48
46	서울특별시 성동구	20,742,235	1,821,680	8.78	16,303,744	2,091,442	12.83
47	충청북도 괴산군	13,872,450	1,210,559	8.73	13,872,449	365,000	2.63
48	강원도 춘천시	21,832,938	1,903,620	8.72	24,521,000	2,075,000	8.46
49	서울특별시 동작구	21,759,418	1,887,525	8.67	18,115,200	1,670,040	9.22
50	대구광역시 달성군	13,814,596	1,152,912	8.35	13,200,000	1,550,000	11.74
51	인천광역시 부평구	9,719,944	810,754	8.34	14,990,592	680,000	4.54
52	충청북도 옥천군	1,860,295	151,765	8.16	1,923,027	158,239	8.23
53	부산광역시 사하구	5,288,999	431,302	8.15	5,288,999	479,818	9.07
54	경기도 고양시	67,873,885	5,519,193	8.13	145,116,000	13,612,903	9.38
55	부산광역시 금정구	5,331,667	432,786	8.12	5,160,000	432,000	8.37
56	대전광역시 중구	6,800,000	534,359	7.86	6,138,852	532,493	8.67
57	서울특별시 강서구	16,037,543	1,258,105	7.84	15,729,992	1,281,999	8.15
58	부산광역시 남구	5,426,473	425,069	7.83	5,697,788	510,074	8.95
59	전라남도 순천시	32,874,963	2,572,216	7.82	33,519,600	2,661,780	7.94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60	서울특별시 구로구	23,749,038	1,849,953	7.79	24,461,509	1,905,451	7.79
61	부산광역시 연제구	4,454,242	329,358	7.39	4,454,233	328,860	7.38
62	서울특별시 강북구	19,310,942	1,416,635	7.34	19,360,800	1,093,110	5.65
63	경상남도 거창군	10,926,437	795,926	7.28	11,472,759	827,000	7.21
64	경상남도 사천시	13,565,114	986,164	7.27	11,509,204	343,801	2.99
65	전라북도 진안군	9,595,125	696,673	7.26	8,785,991	507,217	5.77
66	경기도 이천시	17,170,765	1,239,190	7.22	17,170,765	341,760	1.99
67	울산광역시 북구	9,778,156	705,896	7.22	9,000,000	588,000	6.53
68	강원도 양구군	9,787,738	701,109	7.16	6,915,000	370,000	5.35
69	전라남도 여수시	20,565,160	1,467,734	7.14	19,366,875	2,421,777	12.50
70	서울특별시 마포구	16,909,142	1,141,725	6.75	16,909,142	1,270,000	7.51
71	전라북도 김제시	17,705,086	1,187,636	6.71	17,705,089	1,187,636	6.71
72	서울특별시 관악구	16,727,529	1,118,002	6.68	47,721,138	1,908,846	4.00
73	충청남도 공주시	17,742,465	1,183,609	6.67	17,742,465	1,183,609	6.67
74	부산광역시 서구	3,336,243	222,023	6.65	2,520,000	120,000	4.76
75	전라북도 정읍시	15,564,066	1,024,252	6.58	15,526,000	1,476,000	9.51
76	부산광역시 수영구	3,435,516	222,183	6.47	3,435,516	218,973	6.37
77	인천광역시 중구	12,321,940	791,585	6.42	9,805,936	844,164	8.61
78	경상북도 포항시	41,828,391	2,671,421	6.39	42,638,390	2,808,742	6.59
79	서울특별시 중구	24,957,369	1,582,063	6.34	11,412,000	1,023,600	8.97
80	울산광역시 중구	10,314,607	645,088	6.25	10,314,607	514,295	4.99
81	경상남도 함양군	6,634,417	409,113	6.17	3,600,000	156,000	4.33
82	인천광역시 서구	28,957,145	1,780,437	6.15	28,957,145	1,865,000	6.44
83	대구광역시 동구	6,764,189	410,238	6.06	6,579,300	472,000	7.17
84	경상북도 예천군	14,745,926	859,621	5.83	14,462,000	858,400	5.94
85	경기도 양주시	23,145,988	1,347,275	5.82	23,749,268	1,624,807	6.84
86	충청북도 단양군	10,759,685	623,637	5.80	86,400,000	6,048,000	7.00
87	경상북도 고령군	9,111,637	521,590	5.72	9,120,000	529,000	5.80
88	충청북도 영동군	10,741,585	610,136	5.68	10,939,900	601,910	5.50
89	서울특별시 종로구	9,816,409	552,419	5.63	9,816,409	552,433	5.63
90	전라남도 함평군	11,460,906	642,616	5.61	13,032,089	900,257	6.91
91	대구광역시 서구	11,198,742	627,819	5.61	8,384,323	672,000	8.01
92	충청남도 당진시	31,178,489	1,665,093	5.34	31,175,940	1,422,604	4.56
93	충청북도 청주시	55,787,877	2,967,423	5.32	54,000,000	2,055,000	3.81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903,587	1,105,081	5.29	10,332,000	592,800	5.74
95	서울특별시 강동구	22,995,499	1,204,202	5.24	9,500,000	1,600,000	16.84
96	경기도 의왕시	15,568,558	801,645	5.15	19,163,181	830,645	4.33
97	인천광역시 연수구	17,399,089	892,149	5.13	17,720,000	1,012,800	5.72
98	울산광역시 동구	11,317,948	576,707	5.10	10,350,000	492,000	4.75
99	서울특별시 중랑구	7,856,625	396,872	5.05	7,200,000	322,200	4.48
100	경상남도 통영시	11,512,492	574,175	4.99	11,187,636	517,535	4.63
101	전라북도 완주군	12,614,573	629,028	4.99	12,614,573	651,490	5.16
102	경상북도 영천시	19,806,148	954,560	4.82	19,806,148	954,560	4.82
103	대전광역시 유성구	12,376,627	592,557	4.79	12,996,000	1,548,000	11.91
104	서울특별시 은평구	15,915,136	744,771	4.68	15,915,118	744,771	4.68
105	강원도 고성군	12,580,000	571,000	4.54	12,314,301	1,208,926	9.82
106	경기도 용인시	74,558,125	3,359,868	4.51	74,558,125	3,359,868	4.51
107	울산광역시 울주군	27,413,980	1,231,223	4.49	26,743,321	1,231,347	4.60
108	경상남도 의령군	12,625,257	558,761	4.43	13,635,278	620,036	4.55
109	전라남도 곡성군	11,266,433	497,145	4.41	11,266,424	784,776	6.97
110	경상남도 양산시	40,713,505	1,778,403	4.37	40,713,505	1,778,393	4.37
111	충청북도 제천시	16,924,307	737,590	4.36	16,299,947	129,881	0.80
112	경상북도 성주군	9,708,269	422,336	4.35	9,042,000	440,950	4.88
113	전라남도 구례군	7,308,603	318,271	4.35	7,192,603	515,097	7.16
114	경기도 광명시	19,564,865	850,309	4.35	20,000,000	898,200	4.49
115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3,029	818,194	4.06	14,649,000	622,440	4.25
116	경기도 평택시	61,394,479	2,435,048	3.97	55,531,000	1,247,760	2.25
117	경상남도 창원시	111,461,501	4,361,924	3.91	114,582,423	4,601,830	4.02
118	경기도 하남시	13,883,141	531,324	3.83	14,000,000	528,000	3.77
119	경기도 양평군	16,824,699	637,674	3.79	16,435,000	654,800	3.98
120	대구광역시 북구	10,391,344	392,740	3.78	10,467,655	324,800	3.10
121	대구광역시 달서구	23,343,899	868,552	3.72	23,343,899	911,979	3.91
122	경상남도 창원군	12,102,007	439,293	3.63	12,000,000	480,000	4.00
123	경상북도 청도군	7,627,543	272,688	3.58	3,000,000	74,640	2.49
124	경기도 안양시	23,179,029	811,088	3.50	23,369,854	838,504	3.59
125	전라남도 강진군	11,128,711	388,687	3.49	11,280,000	1,119,000	9.92
126	전라남도 화순군	4,160,562	145,080	3.49	5,532,780	258,000	4.66
127	전라남도 나주시	15,225,298	526,853	3.46	20,427,139	377,470	1.85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28	경상남도 김해시	41,786,246	1,410,129	3.37	62,136,236	3,131,920	5.04
129	경상북도 청송군	8,709,657	293,236	3.37	8,040,000	315,000	3.92
130	대전광역시 동구	6,703,475	225,704	3.37	4,675,078	225,000	4.81
131	대구광역시 수성구	18,130,883	607,846	3.35	16,529,000	1,140,400	6.90
132	강원도 속초시	12,906,362	427,571	3.31	11,871,000	1,884,000	15.87
133	경기도 김포시	19,368,558	638,426	3.30	17,900,000	647,100	3.62
134	부산광역시 동구	4,924,913	161,952	3.29	4,662,375	245,550	5.27
135	부산광역시 중구	2,948,114	96,994	3.29	2,942,500	268,200	9.11
136	충청북도 보은군	10,685,630	348,410	3.26	11,379,814	362,980	3.19
137	충청남도 계룡시	3,807,314	123,134	3.23	3,823,570	124,900	3.27
138	전라남도 진도군	9,751,270	311,619	3.20	6,785,000	418,000	6.16
139	전라남도 무안군	10,827,168	346,464	3.20	8,461,497	237,012	2.80
140	전라남도 고흥군	30,410,512	973,664	3.20	28,016,763	982,210	3.51
141	부산광역시 영도구	10,733,475	335,905	3.13	10,733,475	429,339	4.00
142	강원도 홍천군	24,169,931	752,689	3.11	18,010,000	600,000	3.33
143	경상남도 함안군	10,686,776	327,361	3.06	10,686,776	525,898	4.92
144	광주광역시 동구	9,577,245	291,748	3.05	7,830,000	264,000	3.37
145	경기도 과천시	15,049,512	454,510	3.02	15,199,994	459,039	3.02
146	경상남도 진주시	34,181,872	1,027,709	3.01	35,891,000	1,435,640	4.00
147	전라북도 군산시	44,225,040	1,294,912	2.93	44,225,040	1,294,912	2.93
148	경기도 부천시	66,660,728	1,954,345	2.93	57,080,000	2,006,000	3.51
149	경상북도 봉화군	7,888,013	228,307	2.89	7,845,000	207,800	2.65
150	강원도 태백시	12,315,558	349,494	2.84	12,300,000	351,600	2.86
151	경상남도 산청군	13,373,858	377,624	2.82	13,373,857	534,954	4.00
152	경기도 가평군	11,486,235	323,450	2.82	11,487,700	334,500	2.91
153	부산광역시 동래구	3,761,384	105,378	2.80	3,310,018	103,270	3.12
154	강원도 동해시	11,532,543	315,968	2.74	11,640,000	318,120	2.73
155	전라남도 완도군	13,563,138	361,629	2.67	12,931,388	162,950	1.26
156	경상북도 경산시	9,251,097	238,495	2.58	8,367,000	327,000	3.91
157	경기도 동두천시	8,949,383	224,389	2.51	8,949,384	250,000	2.79
158	울산광역시 남구	18,519,398	460,423	2.49	18,572,190	467,526	2.52
159	전라남도 광양시	12,495,259	300,014	2.40	5,265,143	151,215	2.87
160	경상남도 밀양시	18,972,547	453,213	2.39	19,000,000	950,000	5.00
161	경상남도 합천군	19,162,844	454,646	2.37	19,162,844	766,811	4.00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62	강원도 평창군	23,489,390	538,772	2.29	23,724,284	544,160	2.29
16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2,472,907	282,583	2.27	12,472,907	284,684	2.28
164	강원도 강릉시	20,819,123	470,948	2.26	21,350,123	558,700	2.62
165	충청북도 음성군	16,518,546	364,599	2.21	12,530,056	383,000	3.06
166	인천광역시 강화군	10,313,317	225,917	2.19	10,364,000	228,700	2.21
167	경기도 여주시	16,173,964	345,838	2.14	16,659,182	363,132	2.18
168	서울특별시 송파구	15,256,923	325,135	2.13	15,409,492	328,387	2.13
169	충청북도 충주시	18,977,045	401,123	2.11	18,984,300	301,850	1.59
170	경상북도 울릉군	4,243,788	86,178	2.03	4,243,788	86,178	2.03
171	경상북도 울진군	13,784,635	279,029	2.02	5,508,000	804,000	14.60
172	강원도 양양군	12,862,517	258,293	2.01	12,852,000	252,900	1.97
173	전라남도 담양군	12,905,936	258,151	2.00	18,900,000	405,400	2.14
174	경상북도 칠곡군	11,913,459	235,306	1.98	12,000,000	237,500	1.98
175	충청북도 증평군	5,497,565	102,167	1.86	6,044,312	96,000	1.59
176	충청남도 서산시	34,033,312	631,719	1.86	34,373,645	621,146	1.81
177	강원도 철원군	18,137,050	318,172	1.75	18,089,019	303,573	1.68
178	경상북도 영주시	18,861,881	321,000	1.70	13,651,283	129,900	0.95
179	전라남도 해남군	11,313,686	190,859	1.69	18,705,895	415,271	2.22
180	충청남도 보령시	17,976,958	301,433	1.68	18,650,000	313,000	1.68
181	강원도 화천군	16,611,312	279,384	1.68	17,441,856	352,716	2.02
182	강원도 인제군	14,019,363	224,083	1.60	20,583,000	230,200	1.12
183	대구광역시 남구	10,456,000	167,100	1.60	13,404,000	1,077,600	8.04
184	충청남도 금산군	11,078,896	175,832	1.59	11,208,649	198,832	1.77
185	전라남도 보성군	13,489,829	211,072	1.56	13,489,829	463,070	3.43
186	전라남도 장흥군	15,356,773	233,372	1.52	11,396,777	170,952	1.50
187	경상남도 고성군	8,066,180	119,928	1.49	8,066,290	299,376	3.71
188	경상북도 구미시	37,850,845	564,250	1.49	34,540,000	2,820,000	8.16
189	전라북도 순창군	7,141,718	104,520	1.46	6,913,026	90,000	1.30
190	충청남도 논산시	21,423,662	312,807	1.46	42,305,986	331,700	0.78
191	경기도 의정부시	55,509,740	797,244	1.44	23,385,877	1,598,617	6.84
192	대구광역시 중구	6,671,023	94,470	1.42	6,200,699	62,481	1.01
193	대전광역시 서구	9,208,523	129,282	1.40	8,670,000	120,000	1.38
194	경상남도 남해군	12,611,502	170,344	1.35	12,737,617	509,500	4.00
195	강원도 정선군	11,573,371	156,280	1.35	11,820,000	80,000	0.68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96	경상북도 의성군	19,971,576	268,352	1.34	20,570,723	276,402	1.34
197	충청남도 청양군	11,246,024	145,467	1.29	15,648,000	185,031	1.18
198	전라북도 고창군	12,007,116	153,690	1.28	12,007,116	162,300	1.35
199	전라북도 부안군	13,397,430	169,051	1.26	13,656,192	284,000	2.08
200	경기도 안산시	56,682,138	715,705	1.26	56,965,575	719,283	1.26
201	충청남도 부여군	15,450,261	193,568	1.25	20,771,928	623,172	3.00
202	경기도 연천군	10,990,538	137,338	1.25	9,779,845	142,575	1.46
203	충청북도 진천군	8,787,430	108,880	1.24	7,000,000	490,000	7.00
204	전라남도 영암군	15,071,506	184,802	1.23	15,071,824	252,800	1.68
205	전라북도 임실군	6,632,193	81,157	1.22	5,258,405	85,000	1.62
206	강원도 삼척시	20,982,993	255,320	1.22	20,605,000	260,000	1.26
207	인천광역시 옹진군	9,945,032	120,957	1.22	9,360,000	112,500	1.20
208	서울특별시 강남구	60,792,418	741,367	1.22	59,766,314	741,039	1.24
209	전라남도 영광군	7,092,933	81,851	1.15	9,631,714	87,458	0.91
210	경상북도 경주시	19,566,860	199,415	1.02	19,300,000	203,403	1.05
211	경기도 군포시	19,316,389	197,729	1.02	21,066,354	682,000	3.24
212	충청남도 예산군	25,609,024	257,913	1.01	25,597,000	254,640	0.99
213	경상북도 김천시	13,291,779	125,765	0.95	13,267,709	56,660	0.43
214	경상북도 상주시	21,894,366	198,687	0.91	21,905,000	198,970	0.91
215	전라남도 신안군	12,301,464	107,758	0.88	12,300,000	860,982	7.00
216	경상북도 영덕군	12,809,333	100,837	0.79	12,816,000	128,160	1.00
217	경상북도 문경시	10,906,484	77,935	0.71	10,928,297	218,566	2.00
218	전라남도 장성군	11,115,898	62,052	0.56	11,368,900	104,800	0.92
219	강원도 원주시	41,469,452	228,300	0.55	41,535,000	220,850	0.53
220	부산광역시 기장군	26,516,730	144,486	0.54	26,583,000	78,000	0.29
221	경상남도 거제시	22,002,889	116,874	0.53	22,002,889	1,540,382	7.00
222	충청남도 태안군	23,351,156	114,804	0.49	23,649,110	234,220	0.99
223	전라북도 장수군	15,167,845	51,454	0.34	14,585,000	47,800	0.33
224	경상북도 군위군	10,003,900	24,894	0.25	10,003,900	30,000	0.30
225	강원도 횡성군	12,035,293	9,778	0.08	10,391,300	10,150	0.10
226	경상북도 영양군	8,064,931	4,167	0.05	9,175,000	14,700	0.16
◇ 교육청(17개) ◇							
1	전라북도교육청	280,892,723	17,092,179	6.08	307,418,000	12,832,404	4.17
2	울산광역시교육청	216,308,178	7,108,442	3.29	204,060,000	6,162,930	3.02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3	부산광역시교육청	316,347,075	6,766,967	2.14	221,127,473	20,123,326	9.10
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15,828,678	2,136,230	1.84	91,348,276	3,301,796	3.61
5	전라남도교육청	373,629,116	6,320,040	1.69	374,029,010	6,432,955	1.72
6	충청북도교육청	237,697,334	3,920,070	1.65	233,057,100	3,795,338	1.63
7	서울특별시교육청	990,086,457	16,137,597	1.63	985,000,000	18,870,000	1.92
8	경기도교육청	823,602,854	12,257,782	1.49	830,000,000	13,000,000	1.57
9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143,464,168	1,996,595	1.39	100,000,000	500,000	0.50
10	인천광역시교육청	511,855,563	6,681,554	1.31	371,628,000	6,111,056	1.64
11	충청남도교육청	361,937,834	4,628,499	1.28	344,856,430	4,684,784	1.36
12	광주광역시교육청	217,500,000	2,547,925	1.17	199,999,992	2,486,177	1.24
13	경상북도교육청	421,303,464	4,083,051	0.97	432,228,000	12,972,000	3.00
14	강원도교육청	322,697,391	2,929,431	0.91	333,260,000	3,675,000	1.10
15	대전광역시교육청	169,111,863	1,488,645	0.88	148,773,507	3,537,343	2.38
16	대구광역시교육청	319,622,719	2,422,912	0.76	223,675,000	3,995,921	1.79
17	경상남도교육청	526,032,086	3,283,909	0.62	526,000,000	15,600,000	2.97
◇ 공기업(35개) ◇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5,712,152	1,080,490	6.88	13,568,000	407,040	3.00
2	주택도시보증공사	15,495,916	751,470	4.85	15,496,000	465,000	3.00
3	한국남부발전(주)	197,222,535	7,964,261	4.04	192,000,000	6,000,000	3.13
4	한국남동발전(주)	263,984,845	10,043,543	3.80	258,077,731	8,637,000	3.35
5	한국동서발전(주)	260,525,340	9,825,775	3.77	260,525,340	7,815,760	3.00
6	한국조폐공사	10,489,019	395,754	3.77	10,600,800	335,190	3.16
7	여수광양항만공사	8,737,364	315,012	3.61	11,400,000	418,396	3.67
8	한국토지주택공사	1,034,789,008	36,894,105	3.57	1,034,789,008	37,631,987	3.64
9	한국수자원공사	279,537,259	9,876,262	3.53	474,346,000	14,230,380	3.00
10	한국감정원	9,618,010	329,760	3.43	14,796,977	1,197,200	8.09
11	한국마사회	100,118,899	3,373,520	3.37	101,127,508	3,407,256	3.37
12	울산항만공사	15,012,255	465,027	3.10	13,495,004	404,850	3.00
13	한국중부발전(주)	160,630,800	4,851,202	3.02	158,400,000	4,950,000	3.13
14	한국관광공사	51,487,590	1,549,262	3.01	41,902,000	1,299,000	3.10
15	한국서부발전(주)	273,460,743	8,205,388	3.00	273,460,743	9,025,927	3.30
16	부산항만공사	24,113,206	711,022	2.95	24,309,984	725,242	2.98
17	한국도로공사	1,671,400,663	42,351,039	2.53	1,220,480,158	42,351,039	3.47
18	한국가스공사	251,631,651	6,103,512	2.43	228,823,000	6,858,234	3.00

연번	구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9	해양환경관리공단	59,550,709	1,325,300	2.23	59,811,000	1,342,200	2.24
20	한국철도공사	1,089,083,771	22,710,767	2.09	1,205,500,000	36,165,000	3.00
21	한국수력원자력(주)	868,817,246	17,346,150	2.00	1,200,000,000	36,000,000	3.00
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64,167,930	926,765	1.44	73,655,853	2,209,676	3.00
23	(주)한국가스기술공사	36,165,701	504,818	1.40	49,536,000	1,486,080	3.00
24	한전케이피에스주식회사	228,834,209	3,164,558	1.38	229,032,629	6,870,979	3.00
25	인천항만공사	59,395,492	752,602	1.27	65,575,103	1,320,000	2.01
26	한국공항공사	320,911,377	3,299,096	1.03	254,144,629	7,624,339	3.00
27	한국지역난방공사	155,748,518	1,209,370	0.78	144,857,148	1,448,571	1.00
28	인천국제공항공사	741,226,925	2,476,567	0.33	1,169,836,383	2,724,223	0.23
29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8,036,103	118,824	0.31	43,300,000	585,100	1.35
30	한국광물자원공사	7,508,196	22,368	0.30	5,244,000	157,320	3.00
31	한전KDN(주)	247,612,053	743,383	0.30	234,693,422	7,040,803	3.00
32	한국석유공사	67,655,584	201,654	0.30	45,092,000	138,000	0.31
33	한국전력공사	4,031,266,984	8,246,233	0.20	4,339,810,200	130,194,306	3.00
34	대한석탄공사	69,133,199	18,896	0.03	52,548,000	48,000	0.09
35	한국전력기술(주)	128,774,788	30,096	0.02	113,573,280	3,407,196	3.00
◇ 준정부기관(88개) ◇							
1	한국장학재단	14,865,722	2,103,463	14.15	14,822,000	203,100	1.37
2	신용보증기금	6,622,424	929,819	14.04	6,564,000	924,000	14.08
3	한국우편사업진흥원	14,078,275	1,694,836	12.04	12,000,000	360,000	3.00
4	축산물품질평가원	8,810,329	1,038,598	11.79	12,452,650	706,400	5.67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657,799	289,438	10.89	미제출	미제출	
6	한국특허전략개발원	629,114	56,569	8.99	600,000	18,000	3.00
7	예금보험공사	5,760,395	491,621	8.53	5,762,000	495,532	8.61
8	국민건강보험공단	117,391,778	10,004,989	8.52	117,548,186	4,114,187	3.50
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7,919,459	1,516,298	8.46	17,550,000	527,000	3.00
10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894,143	642,402	8.14	8,132,572	244,605	3.01
11	한국주택금융공사	13,131,983	1,067,389	8.13	12,467,597	374,028	3.00
12	한국시설안전공단	13,209,067	1,057,187	8.00	12,600,000	360,000	2.86
13	한국세라믹기술원	10,343,452	824,222	7.97	9,900,000	297,000	3.00
14	한국과학창의재단	1,979,894	137,979	6.97	1,875,000	71,729	3.84
1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46,713,146	2,793,478	5.98	45,547,000	1,366,410	3.00
16	한국노인인력개발원	6,424,974	329,322	5.13	6,431,500	385,890	6.00

연번	구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7	근로복지공단	104,783,147	5,364,313	5.12	104,784,000	5,364,942	5.12
18	한국소비자원	8,211,234	419,047	5.10	4,365,000	136,900	3.14
19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313,764	765,508	5.00	15,465,000	773,000	5.00
20	한국문화예술회연합회	5,768,271	284,300	4.93	5,134,000	250,000	4.87
21	공무원연금공단	21,329,651	1,039,205	4.87	20,201,201	611,849	3.03
22	한국전기안전공사	27,425,963	1,327,532	4.84	18,944,000	622,600	3.29
23	기술보증기금	13,544,913	650,966	4.81	13,754,000	420,000	3.05
24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792,771	324,218	4.77	5,523,000	172,000	3.11
25	한국무역보험공사	3,653,382	172,662	4.73	3,069,000	93,000	3.03
26	한국소방산업기술원	9,729,874	455,497	4.68	9,727,000	292,000	3.00
2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8,429,136	387,816	4.60	6,000,000	180,000	3.00
28	한국고용정보원	24,240,516	1,098,047	4.53	28,107,000	1,038,000	3.69
29	중소기업진흥공단	50,894,199	2,216,143	4.35	35,570,014	1,121,934	3.15
30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4,702,806	203,827	4.33	5,176,000	157,968	3.05
31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4,520,749	192,652	4.26	6,679,000	305,038	4.57
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339,479	866,093	4.26	22,725,100	719,988	3.17
33	한국연구재단	17,435,367	731,040	4.19	12,978,000	461,700	3.56
34	한국석유관리원	8,126,356	334,209	4.11	9,221,158	276,635	3.00
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1,170,207	1,668,355	4.05	40,615,600	1,683,045	4.14
36	국제방송교류재단	1,939,420	77,745	4.01	1,941,000	58,230	2.99
3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72,101,562	6,748,461	3.92	210,199,000	6,305,970	3.00
38	한국산업인력공단	72,961,305	2,838,157	3.89	70,769,000	2,213,000	3.13
3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7,791,781	682,297	3.83	11,958,900	365,500	3.06
40	독립기념관	18,094,740	686,522	3.79	17,304,941	657,588	3.80
41	국립생태원	14,649,355	541,044	3.69	12,261,000	462,840	3.78
42	도로교통공단	53,417,521	1,910,348	3.58	50,746,645	1,814,588	3.58
43	한국에너지공단	37,450,145	1,335,335	3.57	13,798,008	413,940	3.00
44	국민체육진흥공단	101,011,983	3,487,165	3.45	99,690,000	3,088,600	3.10
45	교통안전공단	70,855,184	2,421,231	3.42	56,576,000	2,749,000	4.86
46	우체국금융개발원	2,958,436	100,659	3.40	3,106,357	105,692	3.41
4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5,963,535	202,353	3.39	5,968,000	207,800	3.49
48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1,091,660	705,408	3.34	16,627,836	515,463	3.10
49	한국산업단지공단	12,388,859	413,816	3.34	12,204,000	366,000	3.00
50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3,054,041	767,424	3.33	22,879,000	690,000	3.02

연번	구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51	한국디자인진흥원	8,103,450	265,061	3.27	8,143,968	251,000	3.08
52	국민연금공단	69,247,529	2,259,647	3.26	69,248,000	2,282,340	3.30
53	한국가스안전공사	25,543,472	832,417	3.26	34,757,961	1,042,739	3.00
54	사회보장정보원	24,553,127	796,195	3.24	23,431,000	0	0.00
55	한국국제협력단	21,996,599	712,684	3.24	21,931,000	719,800	3.28
5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3,523,151	1,697,697	3.17	53,523,500	1,697,750	3.17
5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37,971,804	1,189,058	3.13	28,279,599	1,050,863	3.72
5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6,177,291	498,969	3.08	17,840,000	550,000	3.08
59	정보통신산업진흥원	59,463,278	1,823,990	3.07	60,000,000	1,867,000	3.11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2,469,218	1,297,512	3.06	42,480,000	1,297,000	3.05
6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2,966,634	395,819	3.05	12,681,000	380,430	3.00
62	한국농어촌공사	386,437,267	11,771,416	3.05	386,330,000	11,800,000	3.05
63	한국자산관리공사	12,988,839	393,855	3.03	14,287,725	448,279	3.14
64	국립공원관리공단	42,588,036	1,282,144	3.01	3,426,415	125,100	3.65
65	한국임업진흥원	24,279,644	718,973	2.96	24,280,401	728,389	3.00
66	한국환경공단	111,629,263	3,273,303	2.93	114,000,000	3,420,000	3.00
6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1,508,451	330,127	2.87	11,600,000	350,000	3.02
68	한국언론진흥재단	14,588,731	360,192	2.47	11,200,000	250,000	2.23
6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14,795,731	361,404	2.44	11,293,116	370,000	3.28
70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105,326	50,983	2.42	2,103,000	63,420	3.00
7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7,341,176	417,740	2.41	14,500,000	435,000	3.00
72	영화진흥위원회	10,610,790	240,614	2.27	8,045,000	88,900	1.11
7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4,767,028	307,679	2.08	14,767,028	457,778	3.10
74	한국전력거래소	27,531,548	557,541	2.03	27,718,500	831,700	3.00
75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40,720,934	778,533	1.91	31,552,355	667,450	2.11
76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7,693,364	498,212	1.80	28,710,000	861,300	3.00
77	한국인터넷진흥원	56,963,881	1,001,125	1.76	62,660,269	1,122,131	1.79
78	시청자미디어재단	8,614,942	145,794	1.69	16,256,232	555,225	3.41
79	한국국토정보공사	45,096,304	743,539	1.65	41,126,698	720,927	1.75
80	선박안전기술공단	2,463,466	38,046	1.54	2,064,000	42,000	2.03
81	우체국물류지원단	4,180,732	62,559	1.50	4,064,000	125,119	3.08
82	한국정보화진흥원	179,602,283	2,154,169	1.20	165,418,678	5,008,000	3.03
83	한국광해관리공단	38,891,051	432,313	1.11	34,680,147	1,040,404	3.00
84	한국콘텐츠진흥원	80,339,981	835,174	1.04	64,800,000	1,944,000	3.00

연번	구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8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65,842,319	665,430	1.01	52,799,000	1,583,970	3.00
86	한국철도시설공단	778,303,602	1,700,000	0.22	700,000,000	2,000,000	0.29
87	한국해양수산연수원	16,302,084	15,786	0.10	17,483,000	57,000	0.33
88	아시아문화원	18,171,843	11,272	0.06	15,720,000	471,600	3.00
◇ 기타공공기관(207개) ◇							
1	에너지경제연구원	1,230,983	342,158	27.80	1,221,027	123,000	10.07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662,746	1,378,736	20.69	6,662,746	207,564	3.12
3	한국문화진흥주식회사	86,230	16,812	19.50	83,400	13,400	16.07
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42,408	93,941	17.32	미제출	미제출	
5	(재)한국장애인개발원	3,644,939	627,914	17.23	2,000,000	60,000	3.00
6	(주)강원랜드	207,747,969	35,507,401	17.09	167,218,000	28,577,556	17.09
7	한국벤처투자(주)	3,862,036	596,885	15.46	3,800,000	190,000	5.00
8	재단법인국악방송	28,763	4,350	15.12	48,330	1,692	3.50
9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593,352	186,151	11.68	1,840,012	55,200	3.00
10	(재)한국보육진흥원	438,416	46,502	10.61	455,827	33,462	7.34
11	(재)우체국시설관리단	5,144,233	479,494	9.32	179,155,908	369,494	0.21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73,197	86,908	8.93	966,000	5,760	0.60
13	코레일유통(주)	5,725,267	509,600	8.90	4,550,000	10,500	0.23
14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884,101	231,525	8.03	5,294,652	158,840	3.00
15	항공안전기술원	2,386,632	187,449	7.85	10,680,884	320,427	3.00
16	한국국방연구원	13,000	950	7.31	16,000	1,300	8.13
17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1,137,228	82,775	7.28	975,997	15,000	1.54
18	(주)위터웨이플러스	2,086,400	144,830	6.94	1,008,000	14,558	1.44
1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7,923,191	548,909	6.93	7,770,300	260,000	3.35
20	한국사학진흥재단	1,373,802	85,212	6.20	1,374,100	65,957	4.80
21	산업연구원	1,331,364	80,495	6.05	1,050,000	12,000	1.14
22	한국문화정보원	350,164	20,896	5.97	6,700,000	14,000	0.21
2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1,924	4,285	5.96	60,000	7,000	11.67
24	학교법인한국폴리텍	93,632,061	5,513,433	5.89	88,800,000	3,696,000	4.16
25	건설근로자공제회	3,563,851	196,039	5.50	7,734,829	425,416	5.50
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491,747	80,385	5.39	1,474,000	79,600	5.40
2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37,302,707	1,865,019	5.00	28,584,000	857,520	3.00
2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9,519,821	465,113	4.89	8,934,000	198,700	2.22
29	한국약품안전관리원	1,755,421	84,776	4.83	1,711,471	17,200	1.00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30	국가과학기술연구회	273,770	12,817	4.68	163,000	4,700	2.88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17,473	83,974	4.38	872,100	45,400	5.21
32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45,295	89,114	4.36	1,334,635	53,548	4.01
33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1,445,224	58,877	4.07	836,427	40,500	4.84
34	식품안전정보원	1,624,352	64,398	3.96	2,062,000	20,620	1.00
35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4,616,062	176,950	3.83	3,130,300	205,000	6.55
36	(재)한국여성인권진흥원	460,730	17,243	3.74	249,045	2,490	1.00
37	한국학중앙연구원	8,984,431	335,623	3.74	8,990,000	270,000	3.00
3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053,550	184,730	3.66	5,301,053	179,802	3.39
39	한국보건의료연구원	1,719,706	61,745	3.59	1,728,000	70,000	4.05
40	영상물등급위원회	1,176,933	39,257	3.34	1,203,000	59,100	4.91
41	중소기업은행	45,122,973	1,506,157	3.34	46,464,000	2,000,000	4.30
4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207,057	40,244	3.33	960,000	0	0.00
4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8,506,041	281,904	3.31	21,626,000	717,000	3.32
44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448,859	14,451	3.22	471,302	23,565	5.00
45	(주)부산항보안공사	1,102,293	34,765	3.15	1,710,000	27,000	1.58
4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6,195,361	189,364	3.06	3,770,000	250,000	6.63
47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850,106	116,186	3.02	3,921,000	115,800	2.95
48	울산과학기술원	33,974,497	994,519	2.93	26,742,000	140,400	0.53
49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9,849,119	263,767	2.68	8,016,000	240,480	3.00
50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875,646	22,841	2.61	871,000	24,100	2.77
51	한국재정정보원	4,772,020	124,223	2.60	5,231,000	157,000	3.00
52	(재)한국저작권보호원	3,710,945	96,126	2.59	3,645,849	22,000	0.60
53	국제식품검역인증원	257,818	6,371	2.47	293,710	3,525	1.20
54	한국잡월드	20,817,481	492,032	2.36	22,175,075	665,251	3.00
55	정부법무공단	420,310	9,700	2.31	522,000	10,000	1.92
56	한국기술자격검정원	116,103	2,636	2.27	58,260	800	1.37
57	노시발전재단	3,374,238	75,657	2.24	2,633,000	79,020	3.00
5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1,071,510	245,642	2.22	6,071,000	61,000	1.00
59	(주)한국건설관리공사	419,790	9,340	2.22	418,800	9,600	2.29
60	대한법률구조공단	5,598,474	123,986	2.21	5,598,474	183,806	3.28
61	한국저작권위원회	10,654,832	231,977	2.18	9,857,893	314,556	3.19
62	국토연구원	5,991,032	124,505	2.08	6,146,799	122,936	2.00
63	한국교육개발원	26,969,493	554,261	2.06	26,974,000	554,261	2.05

연번	구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64	한국영상자료원	1,614,691	33,028	2.05	950,000	27,500	2.89
65	게임물관리위원회	3,909,353	77,928	1.99	3,918,225	44,000	1.12
66	전략물자관리원	1,074,277	21,319	1.98	1,203,000	36,000	2.99
6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575,281	49,233	1.91	2,645,000	27,500	1.04
68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6,878,774	674,677	1.83	36,000,000	1,080,000	3.00
69	한국투자공사	1,334,958	24,240	1.82	1,024,000	12,000	1.17
70	한국개발연구원	5,087,765	90,101	1.77	4,920,000	66,900	1.36
71	한국식품연구원	20,061,592	353,542	1.76	21,260,000	243,000	1.14
72	한국노동연구원	657,819	11,361	1.73	657,819	11,361	1.73
73	국방기술품질원	15,182,135	251,157	1.65	12,890,000	200,000	1.55
74	창업진흥원	8,136,391	125,177	1.54	8,136,391	130,404	1.60
75	국립중앙의료원	16,935,010	261,440	1.54	8,784,000	456,000	5.19
76	경제인문사회연구회	350,454	5,329	1.52	383,000	14,500	3.79
77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13,181,000	198,718	1.51	3,820,000	100,000	2.62
78	전쟁기념사업회	6,484,494	92,464	1.43	2,546,300	30,100	1.18
7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983,554	13,411	1.36	1,314,382	12,500	0.95
8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07,209	20,027	1.25	897,000	21,000	2.34
81	예술의전당	15,713,965	195,036	1.24	12,036,000	24,000	0.20
82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3,927,000	168,516	1.21	11,999,500	157,500	1.31
83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6,054,069	72,710	1.20	5,700,000	68,000	1.19
84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4,470,816	289,821	1.18	22,023,735	5,734,830	26.04
85	국립광주과학관	5,287,149	57,531	1.09	3,753,400	65,434	1.74
86	한국건강가정진흥원	3,331,887	36,217	1.09	2,716,000	62,500	2.30
87	한국데이터진흥원	2,595,419	26,968	1.04	2,500,226	8,000	0.32
88	대한적십자사	173,641,848	1,758,647	1.01	194,185,000	9,667,792	4.98
89	한국수출입은행	37,155,299	374,303	1.01	37,700,122	377,191	1.00
9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6,158,141	60,539	0.98	6,180,000	36,000	0.58
91	농업정책보험금융원	3,520,762	34,462	0.98	2,726,765	27,267	1.00
92	한국국제교류재단	8,852,990	86,388	0.98	8,000,000	80,000	1.00
93	한국원자력안전재단	3,131,144	29,791	0.95	3,108,111	3,578	0.12
9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7,215,302	255,783	0.94	18,170,000	180,000	0.99
95	한국예탁결제원	20,821,065	187,480	0.90	19,534,000	197,000	1.01
96	세종학당재단	7,804,930	68,536	0.88	7,784,000	68,536	0.88
97	한국법제연구원	2,569,884	21,832	0.85	2,588,000	26,122	1.01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98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430,728	10,806	0.76	88,400	3,850	4.36
99	한국행정연구원	3,460,114	24,374	0.70	3,119,000	30,000	0.96
100	한국나노기술원	6,168,947	42,752	0.69	6,168,947	61,000	0.99
101	재단법인국제원산지정보원	711,000	4,749	0.67	720,000	4,800	0.67
102	대한체육회	59,964,394	398,735	0.66	60,000,000	600,000	1.00
103	주택관리공단(주)	590,216	3,850	0.65	557,000	3,850	0.69
104	(재)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1,886,516	11,765	0.62	613,698	32,400	5.28
105	중소기업유통센터	21,110,916	125,043	0.59	23,204,000	130,000	0.56
106	국립해양박물관	2,222,216	12,408	0.56	2,282,000	5,000	0.22
107	한국문학번역원	487,801	2,734	0.56	165,000	840	0.51
108	코레일네트웍스(주)	5,367,314	26,683	0.50	5,984,607	29,887	0.50
109	향로표지기술협회	936,016	4,651	0.50	703,700	4,080	0.58
110	통일연구원	312,011	1,531	0.49	195,000	9,750	5.00
111	재외동포재단	10,895,126	52,522	0.48	8,600,000	39,000	0.45
112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1,156,769	5,414	0.47	600,690	4,500	0.75
11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172,353	788	0.46	138,200	1,400	1.01
1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9,433,444	136,647	0.46	29,167,000	875,010	3.00
115	한약진흥재단	7,047,301	31,587	0.45	6,278,265	150,678	2.40
116	부산대학교병원	317,742,135	1,391,842	0.44	280,526,400	1,383,000	0.49
11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6,490,281	27,604	0.43	5,841,253	27,600	0.47
118	한국지식재산보호원	964,710	4,005	0.42	964,710	4,500	0.47
119	재단법인한국특허정보원	3,556,656	13,878	0.39	3,531,056	12,000	0.34
120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4,528,000	17,207	0.38	3,002,000	13,390	0.45
121	한국과학기술원	244,864,080	936,137	0.38	161,140,717	1,165,305	0.72
122	정동극장	483,354	1,672	0.35	371,000	2,400	0.65
123	서울대학교치과병원	13,135,754	46,220	0.35	17,994,984	62,976	0.35
124	강원대학교병원	16,938,988	58,775	0.35	15,498,000	46,362	0.30
125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949,025	2,942	0.31	760,000	6,000	0.79
126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3,894,477	74,625	0.31	24,896,000	248,960	1.00
127	한국지식재산연구원	869,717	2,616	0.30	500,000	1,500	0.30
128	한국산업은행	155,575,149	464,813	0.30	171,761,000	1,718,000	1.00
129	국방전직교육원	2,081,886	5,949	0.29	1,063,304	10,627	1.00
130	예술경영지원센터	3,410,909	9,881	0.29	1,495,000	16,000	1.07
131	코레일관광개발(주)	1,556,000	4,222	0.27	13,080,000	5,000	0.04

연번	구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32	광주과학기술원	18,290,895	49,660	0.27	20,937,600	108,000	0.52
133	국립해양생물자원관	9,826,163	25,703	0.26	10,556,748	16,000	0.15
134	코레일테크(주)	3,738,651	9,600	0.26	3,751,225	10,800	0.29
135	한국문화재단	19,320,788	50,458	0.26	19,900,412	209,088	1.05
136	한국로봇산업진흥원	14,884,557	33,498	0.23	3,750,000	12,000	0.32
137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14,289,861	29,545	0.21	8,486,000	25,458	0.30
138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1,613,858	193,506	0.21	129,183,317	300,000	0.23
139	국립암센터	150,752,064	315,573	0.21	157,560,000	317,000	0.20
14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45,363	1,546	0.21	726,000	5,000	0.69
141	환경보전협회	8,115,655	16,306	0.20	7,306,469	109,597	1.50
142	APEC기후센터	266,090	516	0.19	201,300	5,000	2.48
143	한전원자력연료(주)	69,416,805	128,863	0.19	68,761,595	2,062,860	3.00
144	제주대학교병원	64,563,357	123,520	0.19	64,992,000	660,000	1.02
145	한국원자력의학원	72,602,861	127,953	0.18	65,294,745	836	0.00
146	한국교통연구원	15,216,802	23,314	0.15	9,200,000	19,000	0.21
147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9,559,554	73,884	0.15	50,552,000	75,000	0.15
148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1,439,835	2,035	0.14	1,560,000	1,200	0.08
149	경북대학교병원	11,076,907	15,400	0.14	11,069,607	443,064	4.00
150	충북대학교병원	92,726,211	110,389	0.12	94,130,000	180,000	0.19
151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4,171,148	36,988	0.11	28,500,000	31,350	0.11
152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4,759,249	4,771	0.10	3,033,387	99,000	3.26
1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83,619,849	85,089	0.10	75,500,000	12,000	0.02
154	(재)중소기업연구원	4,828,824	4,500	0.09	5,090,000	12,000	0.24
155	전북대학교병원	139,339,436	118,938	0.09	139,339,436	125,425	0.09
156	한국생명공학연구원	63,525,206	58,636	0.09	63,525,206	59,300	0.09
157	태권도진흥재단	10,976,680	8,588	0.08	10,622,010	12,882	0.12
158	전남대학교병원	293,568,940	204,369	0.07	292,300,000	134,200	0.05
15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2,244,893	31,002	0.07	미제출	미제출	
160	한국해양조사협회	991,050	651	0.07	2,304,000	18,000	0.78
161	코레일로지스(주)	17,753,225	9,978	0.06	18,640,887	19,111	0.10
162	한국어촌어항협회	57,100,378	34,841	0.06	36,431,611	52,928	0.15
163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499,083	870	0.06	1,438,980	2,000	0.14
164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681,859	1,672	0.05	3,678,000	0	0.00
165	기초과학연구원	51,954,038	22,957	0.04	51,954,039	22,957	0.04

연번	구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66	한국고전번역원	4,921,149	1,778	0.04	4,789,152	2,500	0.05
167	한국철도기술연구원	32,066,820	13,280	0.04	32,051,000	13,500	0.04
168	서울대학교병원	477,423,519	183,799	0.04	489,025,000	222,000	0.05
169	부산대학교치과병원	5,025,294	1,395	0.03	5,064,000	4,000	0.08
170	한국화학연구원	42,270,391	10,698	0.03	43,538,503	11,233	0.03
17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65,120,776	20,724	0.03	64,832,515	27,106	0.04
17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4,548,799	19,800	0.02	92,017,412	19,800	0.02
173	한국기계연구원	52,163,648	12,956	0.02	52,361,739	13,700	0.03
174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32,579,331	4,634	0.01	25,750,000	7,000	0.03
175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5,414,875	779	0.01	1,419,400	7,200	0.51
176	경상대학교병원	161,334,087	12,668	0.01	167,848,107	5,035,443	3.00
177	충남대학교병원	154,509,643	15,781	0.01	186,485,375	18,745	0.01
178	한국한의학연구원	13,813,777	1,309	0.01	13,726,044	84,051	0.61
17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389,268,718	12,723	0.00	332,795,000	13,000	0.00
180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42,382,819	360	0.00	41,407,595	3,050	0.01
18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1,412,975	0	0.00	1,417,000	225,000	15.88
182	IOM이민정책연구원	200,387	0	0.00	95,000	3,000	3.16
183	한국원자력연구원	101,234,266	0	0.00	101,237,255	2,062,233	2.04
184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164,304	0	0.00	54,000	900	1.67
185	국립대구과학관	8,626,449	0	0.00	7,750,000	77,500	1.00
186	한국표준과학연구원	49,065,318	0	0.00	53,850,000	37,695	0.07
187	한국상하수도협회	4,924,097	0	0.00	3,392,500	28,500	0.84
188	대한장애인체육회	372,793	0	0.00	3,800,000	20,000	0.53
189	한국장기조직기증원	1,794,500	0	0.00	1,464,700	15,500	1.06
190	국립부산과학관	6,412,861	0	0.00	4,846,000	4,846	0.10
19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237,987	0	0.00	2,480,000	4,000	0.16
19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657,163	0	0.00	2,660,000	2,000	0.08
193	국방과학연구소	244,248,959	0	0.00	237,333,035	0	0.00
194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033,836	0	0.00	13,675,000	0	0.00
195	88관광개발(주)	5,666,970	0	0.00	6,903,000	0	0.00
196	(재)한식진흥원	6,779,382	0	0.00	6,733,782	0	0.00
197	한국문화관광연구원	6,278,311	0	0.00	6,192,000	0	0.00
198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051,257	0	0.00	1,275,050	0	0.00
199	동북아역사재단	1,223,422	0	0.00	1,209,616	0	0.00

연번	구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200	경북대학교치과병원	1,288,450	0	0.00	1,109,000	0	0.00
201	인천항보안공사	847,431	0	0.00	608,075	0	0.00
202	한국전기연구원	42,928,170	0	0.00	41,415	0	0.00
203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7,152	0	0.00	9,600	0	0.00
204	의료법인한전의료재단한일병원	0	0	0.00	479,904	0	0.00
205	한국발명진흥회	13,539,612	0	0.00	미제출	미제출	
206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207	한국천문연구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지방공기업(149개) ◇							
1	경기평택항만공사	2,336,740	528,795	22.63	2,400,000	60,000	2.50
2	전북개발공사	1,321,827	191,908	14.52	1,430,876	15,280	1.07
3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642,122	304,782	11.54	2,972,000	29,130	0.98
4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2,623,431	280,855	10.71	4,764,000	50,400	1.06
5	시흥시시설관리공단	3,892,197	367,423	9.44	4,042,500	194,100	4.80
6	부여군시설관리공단	859,849	80,472	9.36	639,000	59,400	9.30
7	단양관광관리공단	1,057,665	93,254	8.82	1,139,891	73,500	6.45
8	서울특별시사관아구시설관리공단	588,051	47,622	8.10	602,683	6,027	1.00
9	양천구시설관리공단	936,480	75,511	8.06	1,150,000	84,204	7.32
10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839,011	64,501	7.69	1,100,000	11,000	1.00
11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1,591,703	122,209	7.68	2,434,736	48,695	2.00
12	대전마케팅공사	10,613,719	814,259	7.67	7,774,398	78,410	1.01
13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659,331	124,152	7.48	1,956,727	92,008	4.70
14	영양고추유통공사	210,537	15,600	7.41	212,000	16,000	7.55
15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675,376	49,013	7.26	574,600	18,100	3.15
16	중랑구시설관리공단	771,649	53,964	6.99	1,366,714	21,898	1.60
17	구로구시설관리공단	280,331	17,236	6.15	350,000	3,850	1.10
18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728,161	43,382	5.96	1,058,000	41,500	3.92
19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4,558,038	265,200	5.82	4,791,285	52,704	1.10
20	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	2,199,537	123,842	5.63	2,077,090	28,896	1.39
21	용산구시설관리공단	1,069,646	59,093	5.52	1,137,369	34,998	3.08
22	성북구도시관리공단	2,305,330	124,621	5.41	3,806,000	114,189	3.00
23	과천시시설관리공단	1,621,000	86,893	5.36	1,469,000	85,000	5.79
24	강남구도시관리공단	3,798,996	197,012	5.19	2,983,835	72,412	2.43
25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1,824,929	92,764	5.08	2,643,916	18,507	0.70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26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1,456,466	71,736	4.93	1,446,000	43,900	3.04
27	광명도시공사	1,212,758	57,586	4.75	3,016,596	150,804	5.00
28	의왕도시공사	2,452,156	113,826	4.64	2,771,000	86,000	3.10
29	양주시시설관리공단	625,407	28,308	4.53	603,000	25,000	4.15
30	밀양시시설관리공단	910,572	39,043	4.29	750,830	7,508	1.00
31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62,440,993	2,620,910	4.20	65,808,000	2,620,910	3.98
32	광주광역시도시공사	18,934,495	783,365	4.14	13,000,000	254,825	1.96
33	청주시시설관리공단	3,896,669	157,635	4.05	4,286,336	173,399	4.05
34	포항시시설관리공단	2,266,611	88,969	3.93	3,776,781	37,768	1.00
35	전주시시설관리공단	2,608,026	102,125	3.92	1,586,000	39,490	2.49
36	동작구시설관리공단	1,233,826	47,970	3.89	1,248,000	21,600	1.73
37	성남도시개발공사	11,809,392	456,613	3.87	10,688,909	725,980	6.79
38	도봉구시설관리공단	2,232,457	83,775	3.75	1,485,922	14,859	1.00
39	부천시시설관리공단	2,996,910	111,651	3.73	3,120,000	31,212	1.00
40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1,482,756	52,421	3.54	1,446,500	63,600	4.40
41	김대중컨벤션센터	3,960,533	139,798	3.53	3,200,000	32,000	1.00
42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1,120,527	38,732	3.46	1,394,765	13,948	1.00
43	울산시설공단	9,998,223	339,265	3.39	10,196,060	339,580	3.33
44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9,875,704	333,058	3.37	10,111,187	136,784	1.35
45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	620,895	20,582	3.31	568,000	16,450	2.90
46	고양도시관리공사	16,621,505	536,449	3.23	15,000,000	150,000	1.00
47	여수시도시공사	4,023,056	129,508	3.22	1,310,000	82,500	6.30
48	강서구시설관리공단	1,915,960	60,325	3.15	1,856,000	63,924	3.44
49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854,126	58,291	3.14	1,657,800	54,000	3.26
50	강화군시설관리공단	699,889	21,899	3.13	700,000	22,000	3.14
51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761,861	23,795	3.12	757,718	23,812	3.14
52	대구도시공사	4,201,619	129,538	3.08	543,522	38,047	7.00
53	경남개발공사	12,456,952	374,928	3.01	132,000	2,800	2.12
54	용인도시공사	16,092,511	470,698	2.92	16,074,000	470,698	2.93
55	화성도시공사	27,709,902	802,346	2.90	28,541,199	826,416	2.90
56	남양주도시공사	9,200,815	266,014	2.89	9,328,682	186,574	2.00
57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4,070,168	115,777	2.84	3,235,163	50,000	1.55
58	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	2,811,301	79,407	2.82	2,625,680	39,076	1.49
59	김포시시설관리공단	3,121,275	81,666	2.62	5,156,302	52,181	1.01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60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3,156,159	82,374	2.61	2,870,651	52,305	1.82
61	안양시시설관리공단	1,725,799	44,630	2.59	1,680,394	16,804	1.00
62	마포구시설관리공단	1,501,969	38,661	2.57	1,391,362	32,019	2.30
63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17,376,458	435,202	2.50	17,376,458	435,202	2.50
64	안산도시공사	10,821,987	268,717	2.48	9,177,013	86,163	0.94
65	정선군시설관리공단	1,530,895	37,505	2.45	1,352,000	14,500	1.07
66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4,193,578	101,413	2.42	3,800,000	57,000	1.50
67	울주군시설관리공단	2,324,258	55,002	2.37	2,332,610	40,223	1.72
68	아산시시설관리공단	3,503,222	81,384	2.32	4,530,000	50,000	1.10
69	이천시시설관리공단	451,563	10,330	2.29	711,768	7,116	1.00
70	연천군시설관리공단	828,083	18,542	2.24	765,593	16,000	2.09
71	파주시시설관리공단	4,363,571	97,202	2.23	5,099,000	81,000	1.59
72	인천교통공사	39,209,952	862,326	2.20	19,250,000	260,500	1.35
73	서울특별시농수산물식품공사	24,609,659	539,678	2.19	21,933,996	221,340	1.01
74	춘천도시공사	2,836,424	61,176	2.16	3,035,674	89,856	2.96
75	종로구시설관리공단	1,616,977	34,788	2.15	2,028,000	68,900	3.40
76	경기관광공사	8,823,058	185,791	2.11	7,714,000	136,000	1.76
77	강북구도시관리공단	1,599,558	33,695	2.11	2,125,988	21,260	1.00
78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2,235,462	45,782	2.05	2,931,000	58,610	2.00
79	부산교통공사	134,414,984	2,700,182	2.01	143,738,000	2,902,744	2.02
80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4,635,885	91,096	1.97	4,774,961	93,828	1.97
81	속초시시설관리공단	1,014,754	18,875	1.86	981,000	22,500	2.29
82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9,780,493	176,884	1.81	11,000,000	110,000	1.00
83	포천시시설관리공단	1,818,690	31,023	1.71	1,684,000	28,100	1.67
84	기장군도시관리공단	3,302,344	54,414	1.65	4,001,867	40,019	1.00
85	인천광역시계양구시설관리공단	995,162	16,375	1.65	894,000	5,170	0.58
86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839,857	13,630	1.62	880,478	9,300	1.06
87	오산시시설관리공단	1,368,925	21,341	1.56	1,470,000	24,250	1.65
88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1,706,418	26,383	1.55	527,000	24,500	4.65
89	부산지방공단스프링	6,632,209	100,618	1.52	5,910,228	88,653	1.50
90	양산시시설관리공단	1,985,014	29,842	1.50	2,134,870	22,400	1.05
91	창녕군개발공사	1,478,770	22,223	1.50	2,739,164	29,027	1.06
92	부산시설공단	11,938,795	176,391	1.48	8,421,480	131,650	1.56
93	대구도시철도공사	68,047,688	943,770	1.39	54,521,000	545,210	1.00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94	인천도시공사	31,917,206	420,427	1.32	94,197,812	941,978	1.00
95	영월군시설관리공단	372,345	4,856	1.30	407,000	5,420	1.33
96	수원도시공사	9,925,000	124,248	1.25	12,017,420	108,074	0.90
97	서울주택도시공사	299,706,304	3,536,272	1.18	190,773,356	1,734,933	0.91
98	인천관광공사	25,380,486	296,025	1.17	22,725,713	324,823	1.43
99	울산광역시도시공사	10,700,146	124,969	1.17	11,520,000	115,200	1.00
100	김해시도시개발공사	14,783,109	171,192	1.16	16,868,000	168,680	1.00
101	부산환경공단	20,391,797	230,816	1.13	15,926,000	86,275	0.54
10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10,153,733	115,130	1.13	8,922,000	112,520	1.26
103	광진구시설관리공단	608,353	6,626	1.09	618,400	6,800	1.10
104	강릉관광개발공사	1,614,910	17,331	1.07	2,011,441	16,092	0.80
105	달성군시설관리공단	4,513,162	47,512	1.05	5,190,000	51,900	1.00
106	인천환경공단	16,346,830	170,614	1.04	24,212,000	242,124	1.00
107	안동시시설관리공단	3,379,236	34,787	1.03	4,169,000	41,690	1.00
108	경상북도관광공사	5,309,368	53,534	1.01	4,620,000	49,000	1.06
109	보령시시설관리공단	1,482,418	15,042	1.01	1,483,258	14,900	1.00
110	동해시시설관리공단	870,084	8,810	1.01	920,000	11,000	1.20
111	당진항만관광공사	132,498	1,324	1.00	107,668	1,332	1.24
112	창원시시설관리공단	11,692,601	116,926	1.00	11,932,601	119,326	1.00
113	서울교통공사	263,495,992	2,551,268	0.97	263,495,000	2,634,950	1.00
114	창원시경륜공단	7,133,062	68,938	0.97	4,050,000	128,000	3.16
115	여주시관리공단	929,191	8,666	0.93	1,348,543	9,312	0.69
116	제주에너지공사	4,951,960	46,084	0.93	4,960,000	47,200	0.95
117	문경관광진흥공단	3,413,912	31,468	0.92	2,500,000	25,000	1.00
11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3,926,936	304,428	0.9	51,892,000	420,000	0.81
119	부산관광공사	10,215,910	89,718	0.88	7,800,000	90,000	1.15
120	천안시시설관리공단	5,983,052	52,761	0.88	6,632,000	58,889	0.89
121	대구환경공단	27,486,661	237,984	0.87	27,536,000	298,800	1.09
122	구미시설공단	8,532,052	73,436	0.86	11,093,077	332,792	3.00
123	군포시시설관리공단	2,709,493	23,096	0.85	2,575,000	29,000	1.13
124	충북개발공사	11,469,351	96,509	0.84	42,337,272	296,361	0.70
125	제주관광공사	9,873,017	79,891	0.81	6,270,000	62,700	1.00
126	경상북도개발공사	36,291,007	285,587	0.79	39,921,000	399,240	1.00
127	서울에너지공사	11,875,390	92,858	0.78	10,061,961	0	0.00

연번	구 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28	하남도시공사	21,944,651	171,577	0.78	10,496,000	39,977	0.38
129	광주환경공단	10,565,038	75,847	0.72	13,568,000	113,100	0.83
130	통영관광개발공사	3,473,391	20,200	0.58	2,603,000	9,860	0.38
131	함안지방공사	4,008,852	20,394	0.51	3,090,000	33,000	1.07
132	강원도개발공사	42,981,087	218,285	0.51	42,174,186	276,197	0.65
133	부산도시공사	18,382,294	88,854	0.48	27,481,242	274,812	1.00
134	구리농수산물공사	5,405,556	23,195	0.43	4,283,000	12,000	0.28
135	전남개발공사	23,958,763	86,816	0.36	23,430,000	235,000	1.00
136	양평공사	19,360,673	57,977	0.30	14,074,100	60,876	0.43
137	평택도시공사	10,764,007	32,663	0.30	11,086,000	55,310	0.50
138	광주도시관리공사	8,069,516	17,950	0.22	8,647,811	45,278	0.52
139	대전도시공사	29,682,000	66,158	0.22	29,959,000	60,000	0.20
140	구리도시공사	1,063,860	1,337	0.13	1,140,000	5,760	0.51
141	충청남도개발공사	11,089,542	11,064	0.10	12,379,000	20,000	0.16
142	김포도시공사	4,160,797	3,605	0.09	1,800,000	3,200	0.18
143	경기도시공사	161,446,447	135,749	0.08	125,973,384	1,259,733	1.00
144	장수한우지방공사	3,590,512	2,440	0.07	3,751,000	36,000	0.96
145	세종도시교통공사	347,300	0	0.00	978,000	29,340	3.00
146	경주시시설관리공단	132,223	0	0.00	145,234	2,588	1.78
147	충주시시설관리공단	2,639,444	0	0.00	3,903,000	27,321	0.70
148	청도공영사업공사	3,977,306	0	0.00	4,696,728	1,595	0.03
149	청송사과유통공사	1,064,474	0	0.00	1,182,000	0	0.00
◇ 지방의료원(34개) ◇							
1	충청남도공주의료원	511,479	103,488	20.23	464,708	100,000	21.52
2	경상북도 김천의료원	1,156,680	159,329	13.77	1,064,372	184,020	17.29
3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3,188,647	408,798	12.82	3,188,647	408,798	12.82
4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7,429,010	944,845	12.72	5,861,040	410,268	7.00
5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1,061,859	131,011	12.34	1,379,352	100,000	7.25
6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700,105	83,923	11.99	617,896	105,001	16.99
7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6,608,222	656,044	9.93	1,517,839	657,634	43.33
8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1,800,000	143,411	7.97	1,680,000	96,000	5.71
9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9,875,434	773,636	7.83	13,352,496	882,000	6.61
10	인천광역시의료원	10,611,279	742,275	7.00	11,105,942	687,388	6.19
11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1,307,336	39,360	3.01	1,307,336	39,360	3.01

연번	구분	'17년 구매실적			'18년 구매계획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총 구매액 (A)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액 (B)	비율 (B/A)
12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088,730	59,420	2.84	2,091,600	99,192	4.74
1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1,570,041	32,353	2.06	1,590,041	20,196	1.27
14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953,563	16,883	1.77	1,055,376	0	0.00
15	부산광역시의료원	23,435,595	199,356	0.85	23,200,000	220,080	0.95
16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20,416,158	140,711	0.69	21,436,966	282,000	1.32
17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16,606,144	89,069	0.54	16,597,000	102,000	0.61
18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68,865	792	0.47	187,124	187	0.10
19	강원도 원주의료원	1,042,353	4,207	0.40	612,000	4,210	0.69
20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1,732,275	4,070	0.23	2,052,959	20,100	0.98
21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11,262,630	18,642	0.17	12,227,000	61,115	0.50
22	진안군의료원	1,822,388	1,722	0.09	2,186,809	6,000	0.27
23	강원도 삼척의료원	4,920,000	0	0.00	5,256,000	52,800	1.00
24	목포시의료원	318,990	0	0.00	372,945	400	0.11
25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미제출	미제출		2,993,299	19,807	0.66
26	강원도 강릉의료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27	강원도 속초의료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28	강원도 영월의료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29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30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31	대구의료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32	을진군의료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3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34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 특별법인(6개) ◇							
1	한국은행	81,627,393	1,129,285	1.38	73,845,340	289,393	0.39
2	산림조합중앙회	6,611,610	64,749	0.98	미제출	미제출	
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846,000	0	0.00	10,322,000	0	0.00
4	중소기업중앙회	13,718,919	0	0.00	13,589,000	0	0.00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0,553,348	0	0.00	303,853,000	0	0.00
6	대한상공회의소	0	0	0.00	0	0	0.00

붙임2_2018년도 권역별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지원기관 현황

기관현황			
권역	기관명	주소	공공구매 대표번호
서울	사)신나는조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200(충정로2가, 본관)	1566-5365
경기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세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20번길 7, 세진빌딩 2층	
인천	(사)홍익경제연구소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 480, 3층	
강원	(사)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대전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회적협동조합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93, 협동의집 3층	
충북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26	
충남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호서로 79번길 20, 호서벤처밸리 203호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489, 유창빌딩 5층	
경북	사단법인 지역과소셜비즈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27,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5층 2502호	
부산	사회적기업연구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883, 현대빌딩 4층	
울산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중구 신기8길7, 2층	
경남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27번길 30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43, BYC빌딩 7층	
전남	(사)상생나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센터 3층	
전북	(사)전북사회경제포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별관 1층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6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붙임3_사회적기업 제품 판매장 스토어 36.5 운영 현황 ('18.04.11기준)

기관현황				
순번	위치	매장명	주소	매장연락처
1	서울	노원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14, 롯데백화점 지하철출입구	02-3391-3650
2	서울	은평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45	02-384-3605
3	서울	연남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29길 48-5	02-325-9955
4	서울	안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21	02-736-0660
5	서울	미아점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242, 한국전력강북지사 1층	02-982-0004
6	서울	도곡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65길 22, 오이빌딩 103호	02-3462-7117
7	서울	목동 부영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411, 목동부영그린타운 3차 106호	02-2648-1005
8	서울	삼청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16-1	02-739-7945
9	서울	북가좌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색로 100, 가재울래미안 e-편한세상 상가 201동 15호	02-305-0518
10	서울	종로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환경센터 1층	02-735-7161
11	서울	구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175, 엘타워 1층(구산동)	02-385-6233
12	서울	불광센터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센터 1동 1층	02-357-6233
13	서울	응암역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9, 센터플러스 105호	02-356-6233
14	서울	진관점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3로 67, 909동 104호	02-352-6233
15	서울	강서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장산로 5-7, 1층	02-3663-6335
16	서울	화곡점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49, 두레생협 1층	02-2692-7117
17	서울	방이점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31가길 19, 두레생협 1층	02-420-5626
18	서울	성산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27, 두레생협 1층	02-3141-0518
19	서울	용강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 51, 두레생협 1층	02-715-0518
20	서울	신내점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211, 금강리빙스텔 141호 두레생협	02-3423-0518
21	서울	망원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로 57, 두레생협 1층	02-333-0518

기관현황				
순번	위치	매장명	주소	매장연락처
22	인천	만수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로 378	032-466-2341
23	경기	오이도점	경기도 시흥시 역전로 430	031-319-7521
24	경기	시흥 정왕점	경기도 시흥시 경기과기대로 284	031-319-7521
25	경기	안산점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성포로 30, 1층	031-413-0038
26	경기	분당 이매점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성남대로 808, 성남아트센터 내	031-707-1024
27	경기	의왕점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갈미2로 18, 삼대프라자 1층	031-426-6665
28	경기	수원 영통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45번길 7, 영통트리플렉스 제1층 108~9호	031-202-4888
29	경기	용인 죽전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58	031-889-3535
30	경기	분당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곡남로7번길 4-1	031-715-6122
31	경기	동백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평촌1로8번길 11-3	031-274-9316
32	경기	평택 안중점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 8길 21	031-683-3363
33	경기	평택 이충점	경기도 평택시 이충로35번길 22, 뜨란프라자 111호, 114호	031-665-2760
34	경기	부천 소사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 88	032-343-0077
35	경기	시흥 연성점	경기도 시흥시 진말로 9번길 2	031-435-0071
36	경기	광명 하안점	경기도 광명시 안현로 52, 중앙상가 110호, 111호	02-899-8972
37	경기	중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석천로 94, 경동빌딩 1층	032-664-0081
38	경기	상동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265번길 43, 크라운빌딩 1층	032-233-0072
39	경기	중동역점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 108, 펠리스카운티아파트 아이파크 상가내 102호	032-652-0072
40	경기	위브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70-1, 위브더스테이트 상가 6동 126호	032-621-7100
41	경기	송내역점	경기도 부천시 상일로 100, 송내부건프라자	032-326-1172
42	경기	역곡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역곡로 19번길 4, 역곡이편한세상 206동 지층104호	032-342-0071
43	경기	오정점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722, 제이디스카이빌 103호	032-675-0072

기관현황				
순번	위치	매장명	주소	매장연락처
44	경기	은행점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55번길 17, 은행프라자 101호	031-311-3886
45	경기	대야점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18, 105호	031-316-0072
46	경기	능곡점	경기도 시흥시 능곡로 174, 미래도프라자 105호	031-316-0071
47	경기	철산점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01, 이편한세상센트레빌아파트 상가 104호	02-898-0071
48	경기	과천점	경기도 과천시 별양로 46, 래미안슈르제상가5번지동 1008호 두레생협	02-507-3007
49	강원	춘천점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74	033-253-0050
50	강원	동해점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90, 1층	033-535-1211
51	강원	춘천쿠팡박스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공지로 70-61, 쿠팡박스 1층	033-256-0764~5
52	강원	원주 후레쉬 마트점	강원도 원주시 태장둔치길 77, 후레시마트	033-743-8383
53	강원	원주 토요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매지회촌길 110	010-4657-8241
54	강원	횡성 자연비점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어사매로 41	033-343-7135
55	대전	대전 탄방점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583번길 6, 1층	042-224-7004
56	충남	천안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동남구 대흥로 276	041-552-3655
57	충남	당진점	충청남도 당진시 무수동2길 20, 두레생협 1층	041-358-7160~1
58	충북	청주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두꺼비로60번길 25-2	043-224-9484
59	충북	청주 상당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 273번길 10	043-256-9484
60	대구	대구 시청점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20길 32	053-423-5898
61	울산	울산 신정점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87, 중앙빌딩 1층	052-269-1365
62	광주	광주 송정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62	062-943-8216
63	광주	광주점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 동구청 내 1층	062-232-8216
64	전북	전주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물왕말3길 29	063-277-9435
65	제주	제주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과원북4길 11, 스토어 36.5 제주점 1층	064-749-2365

